

개도국 분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분석 및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농정연구원

## - 목 차 -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 2 장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논의동향

1.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논의 배경
2. GATT 체제하의 개도국 우대조항
3. WTO 체제하의 개도국 우대조항

### 제 3 장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분류 관련 논의동향

1. 개도국지위의 결정기준 및 변화동향
2.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분류기준 및 논의동향
3.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관련 논의동향

### 제 4 장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의 논거

1.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여건의 변화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
3. 우리나라의 농업의 여건

### 제 5 장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관련 주요국의 입장

1. UR 협정 체결과정에서 주요국의 입장
2. DDA 농업협상 진행중 주요국의 입장

## 제6장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전략과 대응방향

1.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전략
2. 협상전략의 구성 및 대응방안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의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UR 이전까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협상이었고, 개도국들이 무역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UR부터 임
  - 개도국의 정상적 발전 없이는 선진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또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을 통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임
- WTO체제하에서 보다 개방된 국제시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DDA협상은 GDP의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농업협상은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 목표에 UR 협정에 비해 개도국들의 입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강화하고 있음
  - 개도국 우대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도국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 우대조치의 수혜범위를 줄이기 위해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개도국을 차등화 하거나 졸업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으나, 1996년 OECD 가입과 77 Group 탈퇴,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대 진입 등으로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한 대외적 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 1996년 OECD 가입시 우리나라는 농업과 환경, 기후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 단계에 있음을 인정받았으나, OECD에 가입한지 9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 경쟁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

-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여부는 향후 우리 농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상쟁점이며, 급격한 추가개방으로부터 농업부문을 보호하여, 원만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농업의 정착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지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은 향후 진행될 농업협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는 다자협상 과정에서 도출하는 공통의 기준보다는 Modality에 근거한 이행계획서의 작성과 승인과정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최근 국제기구 및 각종 협상에서 개도국 분류 관련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며 주요 이해관계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Modality 협상과 양허협상 과정에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특히 양허협상 단계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국에 제시 가능한 협상대응 카드를 제안하고자 함. 상대국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득과 실을 파악하고 부문 또는 분야별 보완조치, 협상공조, 회유 및 압박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검토함으로써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한 논리를 제안함
- 또한 향후 Modality 타결 이후 C/S 양허협상에서 논의될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 방안을 사전적 개념에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안 및 고려함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UR 이후 진행된 주요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등 개도국 분류 관련 최근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특히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을 분석함

- GATT/WTO, OECD, UN, IBRD/IMF, FAO 등
  - 2004. 8. 1. 기본골격 합의내용과 최근의 국제동향의 변화
- 특히 GATT와 WTO 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우대조치에 대한 현황과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여건의 변화 및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을 비교 분석함
  - 다른 경제상황보다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 개도국수준 단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이해관계국과 각종 국제기구의 주장에 맞게 개발함
    - OECD 가입당시 우리나라는 농업·환경·기후에 있어서는 개도국 수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 농업은 아직 개도국 수준임을 입증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동조를 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조사와 이들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최빈개도국들과는 경제협력과 더불어 외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기본골격을 기준으로 향후 진행될 협상단계별 개도국지위 쟁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전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각 협상의 진행과정에 따른 Modality 협상, C/S 제출, 양허협상 등 각 상황별 또는 단계별 전략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관련 주요 이해관계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국가별 협상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양허협상 단계에서 제시 가능한 국가별 협상 대응카드를 제안하고자 함. 또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검토하고 개선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함으로써 C/S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시장개방의 폭과 이행부담의 완화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개도국지위 유지에 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서 주요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대내적으로는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한 확고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요 이해관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외교력 발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됨

## 제 2 장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논의동향

### 1.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논의 배경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즉 개도국이란 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
  - 개도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
    -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개발은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
    - 개도국들 간에도 여러 측면에 있어서 개발수준에 차이가 많아 개도국들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 개도국 중에는 특히 국민소득수준이나 경제개발의 정도가 극도로 낮은 나라들을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s)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기도 함
- GATT 다자간무역협상을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협상이었음
  - 이때에도 개도국의 참여와 개도국 우대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개도국들이 무역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부터임
  - 개도국의 정상적인 발전 없이는 선진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번영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된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제경제질서는 국제정치질서와는 달리 형식적인 공정성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 GATT 체제하의 개도국 우대규정은 실질적으로 개도국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개도국의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체제에 개도국의 참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협상력이 증대되어 개도국 자신들의 공정한 무역이익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
  - 선진국도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제무역확장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촉진을 위해 S&D의 검토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1947년 GATT 출범 당시 제18조의 개도국 우대규정을 시작으로 1964년 GATT 제4부 및 1979년 권능조항이 추가되어 지속적이지만 산발적으로 S&D 조항이 보충되었음
  - 그러나 정치적 양자적 협상을 기초로 한 기존 GATT 체제를 벗어나 법규적 다자적 협상을 지향하는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S&D 법규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GATT 체제하의 개도국 우대조항

### 1) 개도국 우대조항의 개요

- 1947년 GATT 출범 당시 23개 체약국중에서 11개국이 개도국이었으나 GATT 규정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도국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없었음
  - 그러나 개도국은 개발수준의 저위, 1차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열악한 국제경쟁력, 국제수지상의 어려움 등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기가 곤란함
  - 이에 GATT는 개도국에 대해 수출촉진(시장접근조건의 개선), 수입제한(국경보호), 국내산업보호 등에 관한 특별우대조치를 도입하였음
    - 수출촉진조치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무역특혜를 부여하고 관세양허에 있어 상호주의의 적용을 배제

- 수입제한조치로 산업화 촉진이나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사용을 허용
  - 국내산업보호조치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문제와 수출비관주의를 고려하여 개도국 수출제품 특히 개도국의 공산품이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우대 조치를 받아야 하며,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의 유치산업보호에 대하여는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임
- 첫째, 자국상품의 선진국 시장진출
  - 둘째, 자국산업의 보호권리

## 2) 개도국 우대조항의 내용

### (1) GATT 제18조의 개정

- GATT 제18조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한 최초의 조항으로 1955년 GATT 검토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개도국에 대하여 관세에 비해 수입제한 효과가 보다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의 사용을 허용한 조항임
- GATT는 체약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을 금지하고 관세만을 국경보호수단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개도국 경제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개도국에게 GATT 제11조의 의무를 면제해줌

### (2) GATT 제4부(제36조~제38조)의 신설

- GATT 제1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50~60년대에도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개도국의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었음

- 1957년 GATT 제12차 총회에서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수출촉진을 위한 선진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1964년 기존 GATT 규정(총 3부 35조)에 제4부(무역과 개발; 제36~38조)를 신설하여 수출촉진 등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음

○ GATT 제4부의 내용은

- 제36조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시장접근조건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음
  - 개도국은 경제개발, 무역, 재정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선진국의 양허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호주의(non-reciprocity)원칙을 명시하였음
- 제37조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무역제한 조치의 철폐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제38조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공동보조를 촉구하였음

**(3)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GATT에서 개도국의 관심사항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자, 개도국들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기구설립을 추진하여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UNCTAD)를 창설하였으며, UNCTAD에서 GSP 제도의 도입이 결의되고, GATT 회원국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한시적 기간 동안 GSP제도의 실시에 합의하였음
  - UNCTAD는 개도국들의 무역특혜 요구를 수용하여 1968년 제2차 총회에

서 GSP 제도의 도입을 결의하였음

- 이후 GATT는 1971년 GATT 제1조(일반적 최혜국대우)에 대한 특별유보조항<sup>1)</sup>을 채택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GSP제도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GSP제도 역시 선진국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개도국에게 자발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GATT 체제에서 선진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음

#### (4) 권능부여조항의 도입

- 국제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공동노력은 1979년 ‘기본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이라고 불리는 4개의 동경라운드협정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었음
  - Framework의 하나인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와 상호주의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and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의 제1항 ~ 제4항을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라고 함
- 권능부여조항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영구적 실시와 개도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적용 면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GSP제도에 대하여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항구적으로 면제하여 GATT 제4부에 규정된 비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도국간 지역 및 국제무역협정, 개도국의 비관세조치 사용,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있어서도 비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1) 일반특혜관세(GSP)제도는 수입국이 개도국에 대해 특별히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GATT의 회원국간 무차별 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최혜국대우)를 위반하는 것인데, 이 특별유보조항은 제1조로부터의 의무면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GS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GATT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임.

- 동경라운드는 권능부여조항에서 개도국우대 조치 확대에 관한 규정의 반대급부로 “개도국 졸업”의 원칙을 도입하였음
  - 일정한 경제발전수준에 도달한 개도국을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GATT 국제수지위원회를 통해 특정 개도국에게 GATT 제 18조의 원용중단을 권고하고 있음

### 3) UR 농업협정에서의 개도국우대 조항

- UR 농업협정은 농산물교역과 국내정책개입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및 원칙들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서 국가간의 능력차이를 인정하여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이행의무를 경감시켜 주고 있음
  - UR 농업협상과정에서 경제적 후생과 식량안보 등 이들 개도국의 특별관심사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책개혁과 시장개방의무에서의 면제 또는 이행기간의 연장 등 특별대우가 부여되었음
  - UR 농업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차별대우와 관련하여 이전 협상라운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그리고 이들 원칙은 WTO 협정의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었음
- UR 농업협정문 전문에 “선진회원국은 시장접근 약속이행에 있어 개도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의 시장접근 기회와 요건을 개선해야한다.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고려한다(S&D)”고 명시되어 있음
  - UR 농업협정문상에 나와 있는 개도국우대 관련 조항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음
- 관세감축(시장접근분야)
  - 농산물 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하고 이를 매년 감축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95~'04) 관세화 유예를 받았음

<표 2-1> UR 농업협정문에서 개도국 우대내용

	선진국	개도국
관세감축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관세화예외- 전통적 기초식량 1품 목의 10년간 유예(한국, 필리핀의 쌀)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	20%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5%	13.3% 감축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10% 감축면제 국내보조 - 농업에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 제공 되는 농업투입재 보조
수출보조	물량기준 21% 재정지출 기준 36% 감축	물량기준 14%, 재정지출 기준 24% 감축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 수송비 지원을 허용
이행기간	6년('95~2000)	10년('95~2004)

- 관세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최소 시장접근(MMA)등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제공함
- 개방이후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를 허용
- 선진국은 6년간 평균 36%, 품목별로 최소 15%를 감축
-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4%, 품목별로 최소 10%를 감축하며, 관세화 예외 조치로 전통적 기초식량 1품목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를 해준(한국, 필리핀의 쌀)

○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 국내보조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지지 효과가 있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직접지불 등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Green Box) 등으로 분류
- 선진국은 6년간 20% 감축하고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은 5%임
-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하고,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은 10%이며, 감축이 면제되는 국내보조는 농업에 제공되는 투자보조금과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는 감축이 면제됨

○ 수출보조

- 수출보조는 재정지원액과 물량을 감축
- 선진국은 6년간 물량기준 21%이며 재정지출 기준 36%를 감축
- 개도국은 10년간 물량기준 14%이며, 재정지출 기준 24%를 감축하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수송비 지원을 허용함(한국은 '95~'02년 사이 1,125억, '02년 279억)

○ UR 농업협정상 개도국우대와 관련된 기본내용은

- 의무이행조건

- 의무이행조건에 있어서 개도국의 감축약속수준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감축약속수준의 2/3 정도로 경감되어 있음
- 이행기간은 선진국이 2000년까지인데 비해 2004년까지로 되어 있음
- 특히, 최빈개도국들은 감축약속의 이행의무에서 면제되며, 관세와 국내보조는 특정한 기준년도 수준에서 양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목적의 재고비축, 농업투입재 및 농업투자에 대한 보조 등은 이행의무에서 면제되고 있음

- 시장접근

-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관세율 쿼터의 할당시 개발도상수출국의 요구에 대해 선진국들이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분야의 감축약속에서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농산물수출에 대해 유리한 시장접근조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보조

-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규정 적용시점의 연기, 국내보조 통지시기의 연장 등 추가적인 의무면제를 인정하고 있음
- 품목불특정적 AMS 규정의 경우 최소허용보조수준은 총농업생산액의 10%로 정하고 있어 선진국의 5% 수준보다는 그 기준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이때 불법마약작물의 생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보조는 개도국의 AMS<sup>2)</sup>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식량안보 목적의 식량비축, 일반적인 농업투자보조 등 허용대상 국내보조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탄력성이 허용되고 있음
- 수출보조
  - 수출보조분야에 있어서 수출판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조제도의 실시와 농산물 수출의 국내 및 국제수송보조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농산물 수출신용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음

### 3. WTO 체제하의 개도국 우대조항

#### 1) 개도국우대조항의 개요

- UR 협상 타결로 과거 GATT 체제가 광범위한 국제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되었음
-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WTO 설립협정”의 전문에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발전과정에서 자국경제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기본입장을 선언하였음
- 제11조 2항에서 특히 최빈개도국은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적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약속이행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고 규정하였음
  
-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대부분의 다자간 무역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

2)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보조총액측정치)란,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동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이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각국별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감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농림부 해외농업정보, 『농업통상용어사전』, <http://www.maf.go.kr/dictionary/terms.asp>]

별우대규정을 두고 있음

- WTO 설립협정안 제4조 7항에는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최빈 개도국에 관한 특별조항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WTO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개도국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음
  - WTO내 다양한 협정에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관련 과제를 추구하고
  - WTO 사무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각종 훈련 및 교육사업)를 제공하고 있음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국제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WTO 체제의 주요한 임무임
  - 그 이유는 과반수가 넘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이는 다자간 무역규범이 선진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공정한 무역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 개도국의 참여가 없이는 다자간 무역규범이나 다자간 무역체제는 제대로 기능 할 수 없기 때문임

## 2) 개도국우대조항의 내용

- WTO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조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으며, 무역개발위원회(CTD)는 현행 WTO 협정상의 개도국우대 조항을 각각의 기능에 근거하여 6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음
  - 무역기회의 확대
  - 개도국권익의 보호
  - 의무이행의 신축성
  - 과도기간 설정
  - 기술지원

- 최빈개도국 추가 우대

<표 2-2> WTO 협정상 개도국우대 조항 유형별 분포 현황

	무역기회 확대	개도국 권익보호	의무이행 신축성	과도기간 설정	기술지원	최빈개도국 추가우대	총계
농업협정	1		9	1		3	14
NFIDC 결정		4			1		5
SPS협정		2		2	1	2	5
섬유협정	1	3				1	6
TBT협정		6	1	1	7	1	16
TRIMS협정			1	2			4
반덤핑협정		1					1
관세평가협정		1	2	4	1		8
특점수입자결정		2					2
PSI협정							0
원산지협정							0
수입허가절차협정		3		1			4
보조금협정		2	8	6			16
세이프가드협정		1	1				2
GATS	3	4	4		2	2	15
TRIPS				2	1	3	6
분쟁해결양해		7	1		1	2	1
GATT 제18조			3				3
GATT 제36조	4	3	1				8
GATT 제37조	2	6					8
GATT제38조	2	5					7
권능조항	1		2			1	4
LDC 우대결정							7
LDC 특혜관세						1	1
합계	14	50	33	19	14	24	155

자료 : 농림부, 「WTO/DDA 개도국 우대 관련 논의경과 및 쟁점」, 2003.1, p.7.

<표 2-3> 농업협정에서의 개도국 우대조항

조문	일반규정	개도국 및 LDCs 우대규정	목적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회원국은 시장접근 약속이행에 있어 개도국의 특별관심품목인 농산물의 시장접근 기회와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고려한다.</li> <li>- 이에는 열대농산물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포함되며</li> <li>-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국의 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다.</li> </ul>		무역확대
제4조와 양허표	- 관세감축 : 평균 35%, 품목별 최소 15%	- 관세감축 :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제6조1항과 양허표	- 무역외국적 총국내보조(total AMS) 감축 : 1995년부터 6년동안 20%	- 무역외국적 국내보조 감축 : 1995년부터 10년간 13.3%	
제6조 2항		- 총국내보조 감축면제 :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보조, 불법적 마약작물의 전환장려를 위한 국내보조는 감축면제	신축성
제6조 4항	-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 5%	- 최소허용 국내보조수준 : 10%	신축성
제8조와 양허표	- 수출보조감축 : '95년부터 6년간 수출보조대상 물량기준의 21%, 재정지출기준의 36%	- 수출보조감축 : '95년부터 10년간 수출보조대상 물량기준의 14%, 재정지출기준의 24%	
제9조 4항		- 이행기간동안 허용 :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수송비 지원	신축성
제12조 2항		- 수출금지 및 제한규정 적용 면제단, 특정식품수출개도국인 경우는 제한규정이 적용됨	신축성
제15조 1항	- 규정과 양허표에 제시된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우호적인 대우의 인식		신축성
제15조 2항과 양허표	- 감축약속경과기간 : 6년	- 개도국 감축약속경과기간 : 10년 - LDCs는 감축약속 이행의무 없음	경과기간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은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대한 개혁계획에 수반될 수 있는 부정적효과와 관련한 조치를 취한다</li> <li>- 농업위원회가 이를 주시함</li> </ul>		LDCs 추가우대
제20조	-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는 지속적인 개혁에서도 고려됨		신축성
부속서 2의 3항	- 식량안보 관련 공공비축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 대우		신축성
부속서 2의 4항	- 국내식량구호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 대우		
부속서 5의 8절	- 개도국의 전통적 기초식량 1개품목에 대해서는 제4조의 양허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shall not). '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함		신축성

### 3) 개도국우대조항의 평가

- 개도국에 대한 GATT 와 WTO 협정상의 특별대우 규정은 상호주의 및 비차별원칙의 적용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비차별적 적용에 따른 개도국의 이익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 무역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규정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선진국의 기술협력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선언적인 규범인 연성법(soft law)에 불과하며,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에 한해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개도국에게 별도의 실제법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이행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협정적용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줌으로써 의무이행을 연기해 준 것에 불과함
- 제3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현행 WTO 협정상의 개도국 관련 규정이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확대, 경과기간의 연장,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강화 등을 채택하였으며, WTO 협정의 충분한 이행 없이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반대함

## 제 3 장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분류 관련 논의동향

### 1. 개도국지위의 결정기준 및 변화동향

-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자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표준은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는 최소한도 국제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 표준이 필요함
- 다만, 개도국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반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도국지위를 결정하는 표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기준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각 국제기구는 어떠한 국가가 개도국으로서 자신이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어떠한 국가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행해야 하는지 및 그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들은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음

#### 1) 개도국지위 결정의 고전적 기준

- 개도국분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인당 GNP 기준이며, IBRD와 IMF 및 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 또한 유사한 방법에 따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음<sup>3)</sup>
  - GATT 제18조 1항과 관련한 패널, UN, IBRD, OECD의 DAC 등은 1인당

---

3) Dr. Joachim Betz, Developing Countries, in: R. Wolfrum(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1(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398 ~ 399.

GNP가 일정수준 이하인 국가를 저개발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운영도 주로 1인당 GNP나 무역규모,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고 있음<sup>4)</sup>

- 개도국의 명칭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는데
  - 전통적으로 개도국과 관련하여 빈곤국(poor countries) 또는 후진국(backward countries)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다가
  - 1940년대 후반에는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ies)이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미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 현재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 이러한 개도국에 대한 용어의 변화는 '경제적 발전'의 개념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개념은 단순히 일정 단계에 있어서 '상태'(developed)의 개념이 아닌 '진행성·연속성·계속성'(developing)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 개도국지위 결정의 현대적 기준

- 한나라의 경제개발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되어 왔던 기준은 당해 국가의 1인당 GNP이지만, 이러한 기준은 국가통계의 부정확성, 국가간 비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음<sup>5)</sup>
  - 현재에는 1인당 GNP 기준만을 가지고 개도국을 분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타 당해 국가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동원하여 개도국지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서헌제, 『국제경제법 -국제통상·통화규범-』, 율곡출판사, 1998, pp.757 ~ 758.

5) A. A. Fatouros,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1986), p.72.

- 현재에는 전통적으로 채택되어 온 기존의 단편적인 분류기준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함께 사회적·정치적 개발지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UN 개발계획(UNDP)은 1인당 GNP와 평균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일국 내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지위, 사회적 기반(infrastructure)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인간개발지수(indices of human development)”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sup>6)</sup>
  - 현재 UNDP는 일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인간개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유럽,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을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1인당 GNP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음<sup>7)</sup>
- 전통적인 경제지표 산출에 있어서 통계의 허점과 왜곡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평균수명,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상 농·공업의 상대적 역할, 국민보건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은 부가적 경제지표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복합적인 지표들의 이용은 통계의 부족, 불신, 비교가능성의 제한 등으로 그 한계성이 지적되기도 함<sup>8)</sup>
- 현재는 개도국을 분류하는데 단순한 2분법적 기준 내지 2원적 분류방법 대신 각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임<sup>9)</sup>
  -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게 되면 개도국 상호간에 증가하고 있는 개발

6) Harvey Leibenstein은 광범위한 범주의 저개발지수로 전체 인구중 높은 농업인구비율, 농업에 있어서 낮은 농업생산성, 낮은 1인당 자본, 1인당 낮은 소득과 최저생계수준에 가까운 생활수준, 낮은 저축률, 낮은 산업고용률,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 농촌의 과도한 인구, 높은 문맹률, 중산층의 부족 또는 소규모의 중산층, 여성의 낮은 지위, 대중의 전통지향적 태도 등을 열거하기도 함.[Dr. Joachim Betz, 전게서, p.399.]

7) M. J. Trebilcock & R. Howse,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obert Howse (ed.), The World Trading System, Vol.1(Routledge, 1998), p.227.

8) A. A. Fatouros, 전게서, p.72.

9) 심영규, “WTO 차기 농업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0집, 한양법학회, 1999, p.393.

- 정도의 차이는 개도국들간의 개발수준의 차이일 뿐, 개도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왔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상당한 개발수준에 도달한 국가들 역시 기존의 선진국들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바가 더 많음
  -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존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개도국의 개념 및 구체적인 범위가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세분화되었을 지라도 전통적인 선진국의 범주는 거의 변함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기존의 개도국을 새로이 선진국으로 재분류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일 것임
- 특히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의무를 부과할 때 보다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 2.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분류기준 및 논의동향

-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의기준은 없으며 단지, 개별국제기구가 통계상의 편의 또는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 등 다소 임의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음

### 1) GATT의 논의동향

- GATT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규정 없이 GATT 관행에 따라 자기선언에 대한 타체약국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개도국지위가 부여되고 있음<sup>10)</sup>

10)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p.290.

- GATT의 관행은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에서 형성된 개도국들의 비 공식 그룹인 77 Group에의 회원가입방식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및 신규회원선출방식이 준용되며, 신규회원국이 개도국지위를 주장하면 77 Group의 의장이 그룹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개도국지위가 부여되도록 하고 있음
- UR 협상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된 미국, EU를 포함한 15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으로 분류되었음
- GATT는 ‘그 경제가 ① 오로지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②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으로서 일정한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GATT 규정상 개도국이라 함은 경제상태가 저생활수준에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음
-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개도국에 대하여는 “졸업”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sup>11)</sup>
  - GATT는 1인당 GNP, 무역규모, 국제수지상황,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의거하여 개도국의 국제수지조향 “졸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국제수지조향의 졸업이 곧 개도국지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과거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 했던 해당 개도국의 국제수지가 호전되어 안정되었기 때문에 국제수지 방어목적으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GATT/BOP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0년 1월 국제수지조향을 졸업하고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국가로 이행하였음
- GATT는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을 통

---

11) GATT 제18조 B항에는 ① 경제상태가 오직 저생활 수준인 개발초기의 개도국이어야 하고, ②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국제수지상 곤란에 봉착한 경우이어야 하며, ③ 대외재정상태를 개선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보유고 확보상 수입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해 개도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내용 및 수준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GATT규정상 개도국이라 함은 경제상태가 저생활 수준에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음

## 2) UN/UNCTAD/FAO의 논의동향

- UN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개도국·선진국·고도선진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여기서 개도국이라 함은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의 상당부분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개발상태에 있고 국민 대다수가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고 있음<sup>12)</sup>
- 1963년 UN에 의하여 마련된 최초의 개도국명부와 1973년이래 갱신된 개도국명부는 우선 선진국들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만, 1971년 총회결의를 통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명부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50개국 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음(최빈개도국의 명단은 <부록> 참조)
  - 2003년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에 의한 최빈개도국 분류기준<sup>13)</sup>에 의하면

---

12) 최승환, 전게서, p.290.

13) a low-income criterion, based on a three-year average estimate of the gross national income(GNI) per capita(under \$750 for inclusion, above \$900 for graduation);

a human resource weakness criterion, involving a composite Human Assets index(HAI) based on indicators of: (a) nutrition; (b) health; (c) education; and (d) adult literacy; and

an economic vulnerability criterion, involving a composite Economic Vulnerability Index(EVI) based on indicators of: (a) the instability of

- 3년평균 1인당 GNI가 750\$에 이하이며
  - 인적자산지수(Human Assets Index; HAI) : 영양상태, 건강, 교육, 성인 문맹률 등의 지표에 의해 구성됨
  - 경제취약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재화와 용역수출의 불안정성, GDP 대비 제조업 및 비정부 서비스의 비중, 상품수출집중, 총인구를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의 취약성 등의 지표를 기초로 하여 구성됨
- 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대한 UN의 기준은 1인당 GNP, 산업화 내지 공업화의 정도, 교육비율 등임을 짐작할 수 있음
- UNCTAD는 개도국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으며 자기결정이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에 따라 개도국 지위가 부여됨
- 77 Group은 UN 산하기구로서 개도국 상호간의 경제성장과 기술협력을 목적<sup>14)</sup>으로 설립되었으며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 개도국들은 UNCTAD 내 소위 개도국모임인 77 Group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77 Group의 정식회원국이었다가 OECD 가입을 계기로 1997년 10월부터 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음
  - 77 Group에 속해 있는 나라는 2005년 현재 132개국에 소속되어 있음

---

agricultural production; (b) the instability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 the economic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activities(share of manufacturing and modern services in GDP); (d) merchandise export concentration; and (e) the handicap of economic smallness(as measured through the population in logarithm); and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displaced by natural disasters. (E/2004/33)[www.un.org]

- 14) 77 Group의 설립목적 : As the largest Third World coalition in the United Nations, the Group of 77 provides the means for the developing world to articulate and promote its collective economic interests and enhance its joint negotiating capacity on all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issue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promot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ECDC/TCDC)[www.g77.org]

- UN 무역개발위원회(UNCTAD)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도국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소득 개도국에 포함됨
  - 저소득 개도국(65개국) : 1인당 GDP 800불 이하('95년 기준)
  - 중소득 개도국(71개국) : 1인당 GDP 800~4,000불('95년 기준)
  - 고소득 개도국(46개국) : 1인당 GDP 4,000불 이상('95년 기준)
  
-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04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11차 총회(UNCTAD XI)를 개최하였음
  - 제11차 총회에서는 192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여 ① 세계화시대의 개발 전략 ② 생산부문 능력 및 국제경쟁력 배양 ③ 무역으로부터의 개발이익 확보 ④ 개발을 위한 시민사회·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문제 등을 세부주제로 논의하였음
  - 금번 총회에서 무역을 통한 개발이익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한 세부주제였으며, 이러한 세부주제가 다시 논의되게 된 근본배경에는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sup>15)</sup>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선진국주도의 세계화 과정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개발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비판에 의해서임<sup>16)</sup>
  - 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개도국에 개발이익을 제대로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특히 UR 협상에서 처음 도입된 일괄타결(Single-undertaking) 원칙이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들까지 개도국들이 수용토록 강요함으로써 개도국의 “정당한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무역정책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
  - 또한 IMF 및 IBRD에 의한 개도국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

15)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탈규제화를 비롯해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1937~)이 1989년 자신의 남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컨센서스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했으며 1990년대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미국내 정치경제 학자들, 행정부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정립됐다. 이 용어는 반세계화주의자들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거대한 음모 내지는 술수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http://www.dongailbo.co.kr/fbin/]

16) 김동배, “무역과 개발문제: UNCTAD에서의 논의”, 『OECD FOCUS』, 2004.7. p.77.

Adjustment Programme)이 각 개도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으로까지 확대

- 개도국들은 개발을 위한 정책재량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결정재량권 (Policy Spa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정책결정재량권은 “각국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범위(따라서 국내경제정책이 국제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정도)”를 의미함
- 금번 총회 결과문서에 경제정책결정재량권 개념을 포함시키는데 개도국들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WTO 무역협상, IMF 및 IBRD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문제 등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 옹호에 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아프리카그룹 및 최빈국그룹은 DDA 개도국우대조항 협상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결정재량권 개념을 원용하기 시작하였음<sup>17)</sup>
- 그러나 선진국들은 경제정책결정재량권 개념이 총회의 결과문서에 반영되었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 개념의 정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동 개념을 무역협상 등에 직접 적용하는 데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임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각국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능률개선, 영양수준의 향상, 농민의 생활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UN의 전문기관이며, FAO는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하고 있음

---

17) 2004년 5월초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제3차 최빈국 통상장관회의 결과문서는 지난해 WTO 칸쿤 각료회의시까지 잠정합의된 WTO 협정 관련 28개 제안이 경제적 가치가 없고, 개도국들에 충분한 경제정책결정재량권도 부여하지 못하다고 언급하고, 5월말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 통상장관회의 결과문서도 개도국들에 경제정책결정재량권을 부여하는 개도국우대조항 개선 제안을 선진국들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음.[Dakar Declaration of Third LDC Trade Ministers' Meeting(W/T/L/566) para. 17, "We are concerned the Annex C of the Derbez Text, is not a substantial Package as most of the proposals contained therein are of no economic value and do not provide sufficient policy space for LDCs."/Kigali Consensus on the Post-Cancun Doha Work Programme(W/T/L/572), para. 19, "..... We stress the need for Africa's development partners to engage positively on this subject that is at the core of the development agenda contained in the Doha work programme by accepting those proposals that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 as being of economic value and as providing sufficient policy space ....." /김동배, 전거서, pp.80~81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는 각종의 통계자료를 통해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농업관련지표에서는 식량수입개도국(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이 개도국목록에 포함되어 있음<sup>18)</sup>

### 3) OECD의 논의동향

- OECD는 상호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통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임
- OECD 설립협약 제1조 목적에 의하면<sup>19)</sup>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OECD는 일단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를 개도국으로 보고있으며 OECD에의 가입사실을 선진국으로의 진입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에 관한 절대적인 합의나 기준은 없음
- OECD는 경제발전도상에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18) FAO, "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s 2010", 1997.

19) Article 1 : The aim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zation") shall be to promote policies designed:

(a) to achieve the highe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Member countrie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b) to contribute to sound economic expansion in Member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on a multilateral, non-discriminatory ba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음
- DAC의 개도국명단은 공적개발원조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부 국가는 이를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함
- OECD에서의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이란 DAC 원조 수혜국명단의 Part I에 속하는 국가를 의미함
- 1999년까지 우리나라는 DAC List Part I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동 명단상의 Part II로 분류되어, 대만,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함께 Part II의 선발개도국(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그룹에 속해 있음

<표 3-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분류

구분	내용	분류기준 <sup>1)</sup>	국가수
Part I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50개국
	Other Low Incomes Countries(Other LICs)	US\$745 이하	22개국
	Lower Middle-Income Countries(LMICs)	US\$746 ~ 2,975	45개국
	Upper Middle-Income Countries(UMICs)	US\$2,976 ~ \$9,205	32개국
	High Income Countries(HICs)	US\$9,206 이상	1개국
Part II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Official Ai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EECs/NIS)		12개국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24개국

자료 : OECD, DAC List of Aid Recipients - As at 1 January 2003, <http://www.oecd.org/>

주 1) 1인당 GNI(2001년 기준)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가입할 당시 농업부문 및 환경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농업과 환경분야가 개도국 수준임을 인정받았음(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최종보고서, TD/TC(96)19/Rev1)

- OECD는 가입자격을 선진국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단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과 관련한 어떠한 선진국기준조항은 존재하지 않음<sup>20)</sup>
  - 실제로 OECD 회원국인 터키, 멕시코 등도 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음
  -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는 기구로서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임
    - OECD 30개 회원국중 한국, 터키, 멕시코 등 8개국은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님
- OECD는 5~6년 단위로 개최되는 농업각료회의에서 향후 농업정책 논의의 큰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OECD 농업논의의 골간은 1998년 3월 농업각료회의 선언문임
- OECD가 그 동안 농업 논의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고 WTO 농산물협상에서 UR 당시와 같이 OECD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8년 3월 5~6일 OECD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이 각료회의는 1999년 말 개시되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을 1년 앞두고 향후 “농업정책 개혁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제3차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개도국 등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게 되어 OECD도 무역위원회와 개발원조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OECD 비회원국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른 대표적인 작업이 ‘비회원국 무역과 개발 보고서(Trade and Development Issues in Non-OECD Countries)’ 작성작업과 다자체제 강화를 위한 ‘무역과 개도국’을 주제로 한 일련의 연구사업계획 제안과 논의임
    - 무역과 개도국에 대한 논의는 2000년 5월 22~23일 개최된 제128차

20)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pp.305~307.

OECD 무역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① 다자무역체제에 있어 개도국의 이해 ② 시장접근 ③ 개도국의 특정 관심사항 등의 세부분으로 구성됨

#### 4) IMF/IBRD의 논의동향

- 개도국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양한 형태의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단계의 경제개발수준을 개도국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 IBRD는 일반적으로 1인당 GNI에 근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며 개도국을 다시 저소득국가(1인당 GNP 610불까지), 중소득국가(1인당 GNP 610불에서 7,620불 사이), 그리고 고소득국가(1인당 GNP 7,620불 이상) 및 고소득 원유수출국(이상 1991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sup>21)</sup>
  -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소득 개도국(high-income country)으로 분류될 수 있음
- IMF는 경제통계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GDP규모, 실업률,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개도국·시장경제전환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IMF 자본이동통계에서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IMF 연간 간행물인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음<sup>22)</sup>

---

21) OECD, OECD Statistics, Development Co-operation, DAC lists, OECD/DAC Statistical Reporting System, DAC Country Lists, <http://www.oecd.org> ; OECD Aid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AC Lists,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A Definition), <http://www.oecd.org>.

22) 이 간행물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규정된 국가는 G7(선진 주요 공업국), EU(15개국), 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멕시코, 터키는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5) 기타기구의 논의동향

###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음
  - 당시 회의 참가국은 178개국이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음
  - 2003년 10월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협약의 구성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약의 의무는<sup>23)</sup>
  - 일반의무 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의무 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공개할 의무,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국가전략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 특별의무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I 국가의 의무와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속서 II 국가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음
  
- 협약의 기본원칙은<sup>24)</sup>
  -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 원칙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

23) 기후변화협약 제4조(의무)에 해당됨.

24) 기후변화협약 제3조(원칙)에 해당됨.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 협약의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음
    - 부속서 I의 국가는 OECD 국가 24개국과 동구권국가 11개국
    - 부속서 II의 국가는 OECD 국가 24개국
  - 한편 최빈개도국은 48개국임

### 3.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관련 논의동향

#### 1) 개도국우대 분야 논의 경과

- 1947년 GATT라는 다자무역체제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9차 다자간협상인 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이 진행중임
- UR 협상의 결과로 WTO가 설립되었으며, 이 때 처음으로 농업분야가 다자협상의 틀로 편입되었음. UR 협상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하였음
  - 당초 협상일정 :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이행계획서 제출('03.9, Cancun 각료회의까지)  
협상완료('04말)
-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우대 조항에 대한 검토를 결정
  - 현행 개도국우대 조항의 효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명확성, 효율성,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WTO 협정상의 모든 개도국우대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또는 S&D) 관련 작업프로그램을 승인하였음
  - DDA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S&D 공여 강화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UR 협상의 결과로 얻어진 무역증진 혜택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집중되었고 개도국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DDA 협상 참여 자체에 대한 개도국들의 거부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에 의해 적극 제시된 것임

- WTO 무역개발위원회(CTD)는 전반적인 개도국우대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대신 개도국간의 차별화 및 개도국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필요함을 주장
  - CTD는 개도국우대 조항에 대한 검토 및 권고사항을 각료회의가 위임한 200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반이사회는 제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 2003년 3월 농업협상 그룹 의장(Harbinson)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음
-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하는 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WTO는 2004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Framework)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이 제안한 기본골격 초안을 기초로 하여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의 논의를 거쳐 7월 31일 일반이사회에서 확정되었음

## 2) 주요 분야별 개도국우대 조치

### (1) 시장접근분야

- 개도국에게는 관세구간을 4단계로 선진국의 3단계보다 세분화하고 이행기간도 선진국 5년의 2배 수준인 10년을 부여해 관세감축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우대함
  - 선진국 3단계 세분, 이행기간 5년
  - 개도국 4단계 세분, 이행기간 10년
- 개도국의 경우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의 이행기간중 연평균 관세감축률은 평균 4%, 최소 3%이고, 선진국의 평균 12%, 최소 9%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여 UR 농업협정에서의 연평균 관세감축율(개도국 2.4%, 선진국 6%의 2/5수준)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확대됨

<표 3-2> 단계별 관세감축율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1차초안 수정안	90% 초과	60%	45%		120% 초과	40%	30%	
	15~90%	50%	35%	5년	60~120% 20~60%	35% 30%	25% 20%	10년
	15% 이하	40%	25%		20% 이하	25%	15%	
					특별품목(SP)( )개 <sup>1)</sup>	10%	5%	
UR협정		36%	15%	6년		24%	10%	10년

주1)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또는 생계보장 차원에서 특별품목(SP, X개)을 허용하고 SP품목의 관세감축수준은 10년간 10%(최소 5%)이며, 시장접근물량(TRQ)의 증량의무도 면제

- 특별품목(SP)이외의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의 증량도 개도국은 선진국의 2/3수준으로 UR 농업협정에 비하여 개도국을 우대하고 있음
  - 선진국 : '99~'01 평균소비량 10%미만인 품목은 5년간 10%까지 확대
  - 개도국 : '99~'01 평균소비량 6.6%미만인 품목은 10년간 6.6%까지 확대
  - UR 농업협정에서는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86~'88기준 이행초년도 평균소비량 3%에서 최종연도에 5%까지 확대
- 개도국은 특별긴급관세(SSG)의 유지가 가능하고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등을 위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의 신

규도입도 가능하나, 선진국은 이행기간 종료후 특별긴급관세 폐지

## (2) 국내보조분야

- 감축대상보조(Amber Box)의 감축률은 UR 협정의 3배 수준에 달하나 개도국의 연평균 감축율은 4%로 선진국 감축율 12%의 1/3수준임
  - 선진국 : 5년간, 60% 감축
  - 개도국 : 10년간, 40% 감축

<표 3-3> 국내보조분야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1차초안 수정안	60%	5년	40%	10년
UR 협정	20%	6년	13.3%	10년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경우 선진국은 현행 5%를 5년 동안 매년 0.5%씩 감축하는 반면 개도국은 현행 UR 수준인 10% 유지
  - 선진국 : 현행 5%를 5년 동안 매년 0.5% 감축
  - 개도국 : 현행 10% 수준 유지
- 생산제한조건부직접지불(Blue Box)의 경우 선진국은 최근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5년간 50% 감축 또는 AMS에 포함시켜 감축시켜야 하며, 개도국은 최근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10년간 33% 감축 또는 이행 5년째에 AMS에 포함시켜 감축시켜야 함
  - 선진국 : 최근 실적기준 5년간 50% 감축 또는 AMS에 포함
  - 개도국 : 최근 실적기준 10년간 33% 감축 또는 이행 5년째 AMS에 포함
-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선진국에 대해서는 지급요건을 강화한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허용보조의 도입을 허용
  - 선진국 : 지급요건을 강화

- 개도국 : 지급요건을 완화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도 적용요건의 완화 : 신규허용제도 도입
  - 식량안보목적의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 농촌경제활력과 문화유산유지를 위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 (3) 수출보조분야

- 주요 수출보조품목의 감축률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큰 차이가 없으나 이행기간 종료 후 수출보조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개도국은 보조지급 가능기간이 선진국의 2배임
  - 선진국 : 총수출보조액의 50%에 해당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으로 전년대비 30% 감축, 6년째 철폐
  - 개도국 : 총수출보조액의 25%에 해당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으로 전년대비 25% 감축, 11년째 폐지
  - 그러나 수출보조는 EU, 미국 등 주로 선진국이 지급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취약해 수출보조 지급여력이 없는 개도국에게는 우대조치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sup>25)</sup>

<표 3-4> 수출보조분야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1차초안 수정안	총수출보조액의 50%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30%	감축 6년째 철폐	총수출보조액의 25%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액과 물량기준 전년대비 25%	감축 11년째 폐지
UR 협정	재정지출 기준 36% 물량기준 21%		재정지출 기준 24% 물량기준 14%	10년

25) WTO 사무국에 의하면 UR 농업협정에 따라 수출보조금 감축계획이 있는 회원국은 25개국이며 이중 10개국이 개도국임. 10개의 개도국 가운데 UR 이행 3차년도까지 수출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개도국은 5개국으로 실제로 WTO의 총 131개 회원국 중 수출보조금 감축분야의 우대조치가 의미를 가지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 [WTO Secretariat, Export Subsidies, G/AG/NG/S/5, May 11, 2000]

### 3) 개도국우대 관련 논의동향

#### (1) DDA 농업협상(농업위원회)

-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Text 상 선진국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강화된 반면 개도국에게는 우대조치를 UR 때보다 상대적으로 확대함
- DDA 농업협상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 우대조치의 내용은
  - 전체적으로 UR 농업협정에 비해 선진국의 부담은 강화하고, 개도국의 우대조치는 대폭 확대하였음
  - 개도국의 보조금 및 관세감축수준은 선진국의 약 2/3수준이며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2배 수준(개도국은 10년)으로 연장
  - 개도국에게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세감축부담을 완화하고 TRQ 증량의무도 면제
  - 개도국에게는 허용보조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개도국만을 위한 허용보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특별긴급관세(SSG)의 유지 및 새로운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의 신규도입도 허용
  -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50% 감축하는 반면 개도국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선진국등 일부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조치의 수혜대상국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개도국 분류기준을 객관화하여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
  - EU는 '02.12 EU 제안서에 선발 개도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
  - 미국은 개도국 우대조치를 강화한 하빈슨 의장 Text 제시 후 농업분야 개도국 우대조치의 수혜대상 개도국의 기준 마련을 주장<sup>26)</sup>
    -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최종합의를 위한 농업협상 회의('03.3.24~28)에서 미국이 행한 발언이나 당시 세부원칙 합의가능성 여부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도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특별한 반응을

26) Reuters, "World farm trade talks deadlocked, deadline looms", March 25, 2003.

보이지 않았음

- 불가리아도 경제개발수준과 1인당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개도국 우대조치를 적용할 것을 주장<sup>27)</sup>하였으나 케언즈그룹 개도국들과 일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그룹(Like-Minded Group)<sup>28)</sup>이 거세게 반발하여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이에 대하여 파키스탄 등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

## (2) 무역개발위원회(CTD)

- WTO 무역개발위원회(CTD)는 전반적인 개도국우대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우대 조치를 강화하는 대신 개도국간의 차별화 및 개도국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필요함을 주장
  - 본질적으로 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며 임시적 성격으로 간주, 졸업개념 도입을 강조
  - 개도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 S&D 의무화는 중요치 않으며 WTO 전체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도하각료회의의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02.7까지 일반이사회에 권고토록 하였음
  - 의무적 개도국우대 조항과 비의무적 개도국우대 조항을 구별
  - 의무적이라고 간주할만한 법적 관행적 암시에 대한 연구
  - 회원국들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도국우대 조항의 규명
  - 개도국우대와 WTO 규범의 조화 방안
- 무역개발위원회는 개도국우대 조항에 대한 검토 및 권고사항을 각료회의가

---

27)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6 Number 40, November 21, 2002.

28)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스리랑카 등 개도국의 비공식 연합체.

위임한 200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반이사회는 제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 무역개발위원회 제1차, 제2차 특별회의(2002년 3월 ~ 4월)
  - 제1차 회의에서는 기초자료분석과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제2차 회의에서는 개도국우대 조항의 원칙과 목적, 강화방안, 의무화가 필요한 조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무역개발위원회 제3차 ~ 제5차 특별회의(2002년 5월 ~ 7월초)
  - 각 국별로 14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음
  - 협정별 제안, 제도적 문제, 교차 쟁점별 논의, 향후방향 등 4가지 카테고리 로 묶어서 논의하였음
- 무역개발위원회 제6차, 제7차 특별회의(2002년 7월)
  -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일반이사회는 2002년 12월까지 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장하였음
  - 협정별 제안, 교차 쟁점별 제안, 모니터 시스템 관련 논의, 기타 이슈 및 향후방향 등으로 향후 논의될 4가지 카테고리가 확정되었음
  - 일반이사회는 모니터 기구 설립을 승인하고, 동 기구의 기능, 범위, 시기 등은 추후 구체화시킬 것을 제시하였음
- 무역개발위원회 제8차 ~ 제14차 특별회의(2002년 10월 ~ 12월초)
  - 8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회원국의 참가는 늘었지만 각국간 시각차이는 현저함
  - 협정별 사안과 교차쟁점별 사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활동시기, 구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적인 견해를 개진하고 있음
  - 개도국우대 조항과 WTO와의 조화문제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논의 되었음

○ 무역개발위원회는 개도국이 WTO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WTO 협정 전반에 대한 개도국우대 문제를 논의<sup>29)</sup>

---

29) 이는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관련문제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에 의한 것임.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직접 관련이 되는 무역개발위원회 논의는 개도국의 분류 및 졸업에 관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입장은 <표 3-5>에 정리되어 있음

<표 3-5> 개도국 분류 및 졸업에 대한 주요국의 주장

입장		주장
찬성	일본	· 개도국우대의 형태는 협정별 국가별로 달라야 함
	스위스	· 최빈개도국과 다른 개도국간 차별 및 새로운 범주를 설정해야 함
	EU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도국을 구분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개도국지위로부터 졸업하도록 함
	미국	· 각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졸업의 개념보다는 차등화(differentiation)개념을 도입함 · 지금 협정에서도 농업 등 분야별 접근방식을 하거나, 금지보조금 유예기간과 같이 개도국을 세분화한 경우 등도 있음
	체제전환국 <sup>1)</sup>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를 주장
반대	우리나라	· 개도국지위 세분화 및 졸업에 관한 논의는 도하각료선언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반대함 ·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할 경우 오히려 개도국우대조항 강화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지연될 수 있음 · 개도국을 세분화해서 각각 다른 규범을 적용하게 될 경우 WTO 체제의 일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
	파라과이, 태국, 말레이시아	· 개도국그룹의 연대를 위해 개도국분류 및 졸업 개념 도입에 반대함

주 1) 체제전환국은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을 포함한 회원국을 말함.

자료 : WTO(<http://www.wto.org>)

임송수김상현, 『WTO 개도국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9., p.7.

- EU, 미국, 스위스, 일본, 체제전환국 등은 개도국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개도국우대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채택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부 개도국(파라과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들은 개도국의 세분화 및 졸업이 각료회의의 위임사항이 아니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 EU 등은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간에도 발전수준의 차이가 존재

하므로 개도국우대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차등화<sup>30)</sup>’와 ‘졸업<sup>31)</sup>’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

- 도하각료선언문에는 개도국 차등화나 졸업문제에 대한 위임사항(mandate)이 없으므로 DDA 협상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도국들이 거세게 반대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분야와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도 선발개도국을 일반 개도국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개도국들은

- S&D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 타 국제기구와의 동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며
- 각 협정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선진·개도국간의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개념에 대한 견해차가 큼

- 특히 인도 등 개도국들은 개도국 그룹 연대를 위하여 개도국 분류 및 졸업개념 도입에 반대
- 한국은 개도국지위 세분화 및 졸업논의 자체를 반대
  - 도하각료선언에 이와 관련된 위임사항(Mandate)이 없고
  -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경우 개도국우대에 관한 합의도 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규범을 적용시 WTO 체제의 일체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미국은 공공연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가 개도국이 될 수 없음을 강조<sup>32)</sup>

30) 차등화라 함은, 개도국을 발전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다시 세분화함으로써 개도국 우대조치를 일률적으로 모든 개도국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임.

31) 졸업이라 함은, 경제발전이 일정수준 이상인 개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 그룹에서 제외하여 개도국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임.

#### 4)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UR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
    - ② 이행계획서 제출('03.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 말)
  - 2003년 3월 하빈슨 농업현상 의장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여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Framework) 만이라도 합의하려 하였으나 실패
  -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Framework)만의 타결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됨
  
- 기본골격의 개요는
  - “농업보호 수준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관세와 국내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harmonization)을 채택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개도국우대를 강화하여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축성 부여
  - 회원국간 입장이 상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계속될 후속 협상과제로 넘기고 기본골격만 합의
  
- 기본골격의 주요내용은
  - 시장접근분야 : 개도국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관세감축방식, 낮은 관세감축율 적용,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 TRQ 증량,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명문화

---

32) 2004년초 Inside US Trade

- 개도국에 있어 특별품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여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하여 제시하고,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
-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SSM)를 설정
- 국내보조분야 : 기본원칙
  - 개도국 우대에 대하여는 긴 이행기간,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개도국 우대 국내보조(농업협정 제6.2호)는 유지함

<표 3-6> 기존초안과 기본골격의 비교

	Harbinson 초안	Derbez 초안	기본골격
<시장접근> 민감품목 신축성부여	<p>&lt;선진국&gt; - 해당 없음</p> <p>&lt;개도국 : SP 품목&gt; - 평균10%, 최소5% 감축, TRQ증량면제 - 대상품목은 스스로 선택 - 이행기간 2배</p>	<p>&lt;선진국&gt; - 해당 없음</p> <p>&lt;개도국 : SP 품목&gt; - 최소 [ ]% 선형감축, TRQ 증량면제 단, 이미 관세가 상당히 낮으면 감축면제</p>	<p>&lt;선진국&gt; - 품목의 자율선정권인정 -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에 대해 인정 - TRQ증량과 관세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 - 품목별 TRQ 증량 - 최저감축률 적용</p> <p>&lt;개도국 :SP 품목&gt; -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 - 적절한 수에 대해 인정 -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협상에서 보다 구체화</p>
<국내보조> 최소허용 보조	<p>&lt;선진국&gt; - 5년간 매년0.5%씩 감축</p> <p>&lt;개도국&gt; - 현행유지</p>	<p>&lt;선진국&gt; - [ ]% 감축</p> <p>&lt;개도국&gt; - 감축면제</p>	<p>&lt;선진국&gt; - [ ]% 감축</p> <p>&lt;개도국&gt; - 개도국우대원칙 고려 - 자원부족농·생계농에 대한 de minimis의 중요성 고려</p>
<수출경쟁> S&D	<p>-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p>	<p>-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p>	<p>-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 - 개도국 수출국영무역에 대해 의무 면제</p>

- 수출경쟁분야 : 개도국우대
  - 긴 이행기간을 부여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를 유지(농업협정 제9.4조)하고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 이후 협상되는 적정한 기간동안 존치
  -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의 국영무역기관(STE)의 독점적 지위유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

○ 주요 쟁점별로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 시장접근분야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의 경우 개도국을 위한 이행기간, 감축폭 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SP, SSM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며, G33 등 수입개도국 그룹은 SSM이 현행 SSG보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내보조분야에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감축의 경우 개도국과 신규가입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EC, 미국 등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수출경쟁분야에서 수출신용 상환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180일 이하로 제한하려는 EC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도국들은 수출신용수혜를 위한 신축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음
- 기타의 분야로 미국은 분야별 자유화 도입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분야별 자유화가 개도국우대와 상충된다고 주장함

## 5) 개도국우대 관련 향후 논의전망

- 농업협상 세부원칙 합의 이후에도 WTO 농업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등에서 선진국, 개도국간 개도국의 세분류화, 졸업개념 도입 등 분류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
  - 개도국 세분류화·졸업에 대한 미국, EU의 주장은 개도국의 거센 반발로 논의 자체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등 여러 협상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간 심각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차등화·졸업문제는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개도국 분류기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DDA협상에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협상전체가 지연되지 않는 한 최종합의도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선진국들이 개도국 분류기준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더라도 개도국이 계속 반발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개도국들의 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WTO에서 개도국의 발언권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 개도국 분류기준의 객관성문제, 분류기준과 관련된 기술적 작업의 어려움, 기준의 개별 협정별 적용 또는 전체 협정에 대한 획일적 적용 문제, DDA 타결시한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번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분류기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 개도국 분류기준 엄격화 주장은 일반 개도국 진영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자차원보다는 양자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자 협상에서 개도국기준 문제는 일반개도국 보다는 한국, 싱가포르 등과 같은 소수의 선발개도국에 국한되어 제기될 전망
- 그러나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하여 미국 등 수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기존의 동조국들까지 반대하고 있어 금번 협상에서 우리의 최대의 과제임
-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UR 협상 결과보다는 더 큰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UR 협정시 인정되었던 개도국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제 4 장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의 논거

### 1.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여건의 변화

-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협상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1990년을 전후로 IMF 제8조국(일반적 IMF 의무이행국) 및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국으로 이행, 선진국으로부터의 GSP 수혜종료, 1990년대 중반까지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의 돌입, 1996년 OECD가입 등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부문간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금융위기로 인한 IMF 금융지원체제로의 전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필요성 등이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의 높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의 부진, 농가소득액(증가율 포함) 등 농업관련 지표와 여건의 상대적 정체성, UR 협상 타결과 IMF 금융지원체제를 전후로 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침체와 악화상황은 최소한 이번 농업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
  
-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됨
  -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IMF 제8조국 이행과 GATT 제11조국으로 이행을 하였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도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국가들이 개도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을 전적으로 개도국에서 제외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표 4-1>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한국의 협상여건 변화와 대응책

구분	내용	대응책
부정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을 전후한 IMF 제8조국 및 GATT 제11조국으로의 이행</li> <li>· GSP 수혜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슷한 이행과정을 경험한 국가들과의 비교분석과 GSP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통해 이를 개도국졸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중반까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li> <li>·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의 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형적 경제성장과 불균형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필요, 단순한 GNP 기준을 통한 선진국분류의 불합리성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OECD의 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의 가입은 곧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개도국들이 가입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li> <li>· 가입시 농업부문과 환경부문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지적</li> <li>· OECD 가입, 선진국진입과 WTO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지위 문제는 별개임을 지적</li> </ul>
긍정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기형적인 경제발전</li> <li>· 금융위기로 인한 IMF 금융지원체제로의 전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필요</li> <li>·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계속된 구조조정의 부진 및 상대적 낙후성</li> <li>· UR 협상타결과 IMF 금융지원체제를 전후로 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침체와 악화</li> </ul>	

자료 : 심영규, “WTO 차기 농업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0집, 한양법학회, 1999, p.405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사실을 선진국 진입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으나 OECD 설립목적에서도 OECD의 가입은 특별히 선진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개별협정이나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OECD 자유화규약 제17조에서 개도국의 가입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OECD 가입사실 자체로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가입당시 농업부문과 환경부문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고, 멕시코와 터키도 개도국지위의 상실 없이 OECD에 가입하였음
  - 따라서 OECD 가입 이후에도 사안별·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봄

-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존의 환경관련 협상이나 UR 협상과정에서 확보한 개도국지위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봄

##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는 OECD 가입과 UR 이후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표적인 경제지표라 할 수 있는 1인당 GNI와 GDP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그 밖의 다른 경제지표로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가, 국제경쟁력의 악화, 국가신용도 하락 등, 여러부문의 관련지표가 OECD 가입전보다 악화되거나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기타 관련지표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 생활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인구노령화지수,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인간개발지수 등 소위 사회적지표들도 기존의 선진국 수준과는 많은 격차가 있음
- 농업부문 관련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액의 감소,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농가부채의 증가 등이 이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비중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 및 농가 호당 경지면적 등의 지표도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농가현실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이 선진국의 경제발전수준과는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1) 경제관련 지표

- 경제관련지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변화가 일어난 몇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비교분석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온 GSP의 수혜의 종료, IMF 제8조국 및 GATT 제11조국으로 이행이 이루어진 1989년과 1990년
  - UR 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가 인정된 시점인 1993년과 1994년
  -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한 논란이 격화된 시점인 1995년과 1996년
  - 우리나라의 외환유동성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 시점인 1997년과 그 이후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현상향을 보기 위한 최근의 자료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나라 국민경제의 일정기간 동안의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로서 그 국가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며,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임
  - GDP와 GNI만으로는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이나 소득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GDP와 GNI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DP와 1인당 GNI를 살펴보아야 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1인당 GNI와 GDP는 <표 4-2>와 <표 4-3>에 정리되어 있고, <그림 4-1>은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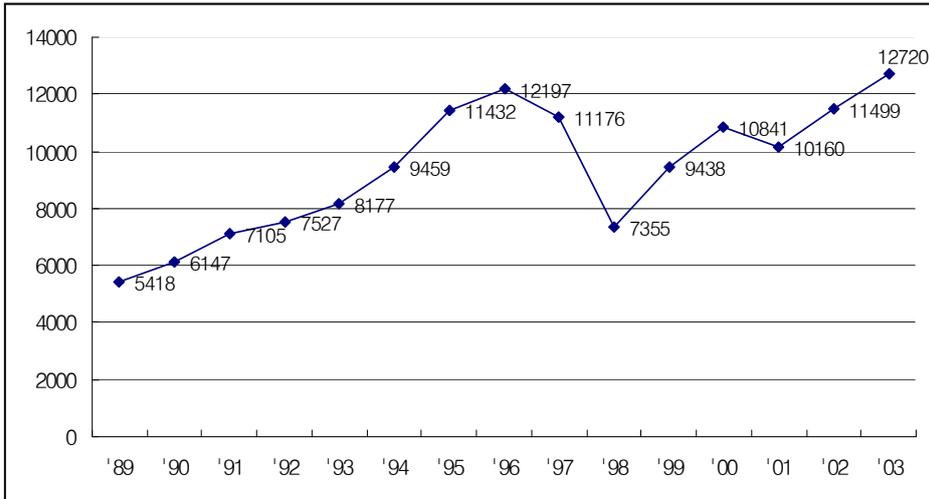
<표 4-2>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

(단위 : US\$, 2000년 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인당GNI	11,432	12,197	11,176	7,355	9,438	10,841	10,160	11,499	12,720
1인당GDP	11,471	12,244	11,237	7,477	9,549	10,888	10,180	11,749	12,628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그림 4-1>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추이



-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는 1980년대 후반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1996년 OECD 가입 당시 12,197달러로 최고를 보이다가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2000년대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기준의 1인당 GNI와 GDP는 12,720달러와 12,628달러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의 수준은 선진국그룹으로 대표되는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1인당 GNI와 GDP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4-3> 주요국의 1인당 GNI와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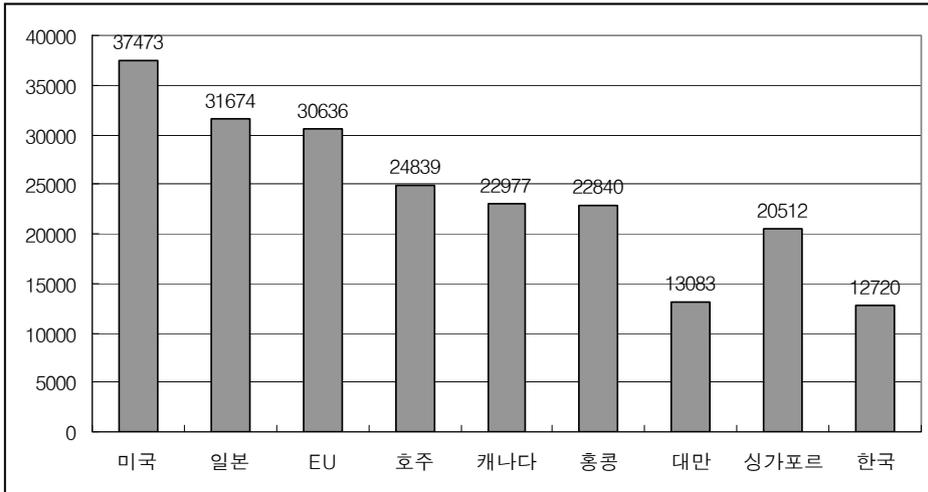
(단위 : US\$, 당해년가격, 2003년 기준)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1인당GNI	37,473	31,674	30,636	24,839	22,977	22,840	13,083	20,512
1인당GDP	37,368	33,648	30,502	25,599	23,536	22,224	12,649	20,798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1인당 GNI의 경우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는 2002년 기준.

<그림 4-2> 주요국의 1인당 GNI 비교(2003년 기준)



- 2003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NI와 GDP는 각각 37,473달러와 37,363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는 미국의 33.7%와 33.8%수준에 불과하며 일본의 1인당 GNI와 GDP도 각각 31,674달러와 33,648달러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1인당 GNI와 GDP 대비 39.9%와 37.5%에 불과함
  - 또한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인 홍콩, 싱가포르 등의 1인당 GNI와 GDP는 2만달러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1만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함
  - 그리고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 평균은 2003년 기준 25,654달러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2,628달러로 OECD 평균 1인당 GDP의 1/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표 4-8> 참조)
  -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는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다른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신흥개도국에 비해 여전히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점차 감소추세이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4-4> 우리나라의 대외채무현황

(단위 : 백만불, %)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외채	34,968	115,803	137,138	139,270	130,508	128,396	110,109	143,949
GDP	263,700	557,400	516,400	346,100	445,200	511,800	482,000	546,900
비율	13.3	20.8	26.6	40.2	29.3	25.1	22.8	26.3

-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도 1990년에는 13.3%였으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인 1996년 20.8%,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0.2%로 최고를 보이다고 1999년 29.3%, 2000년 25.1%, 2001년 22.8%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다시 26.3%로 GDP에서 대외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 경제외적인 지표로서 최근에는 개별국가, 산업,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평가하는 기준으로 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1987년 처음으로 세계경쟁력 연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sup>33)</sup>
  - 이 국제경쟁력 지표가 한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외적인 인식과 신인도, 투자환경의 조성 및 장래의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어짐

<표 4-5>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미국	일본	호주	홍콩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한국
2004년	1	23	4	6	29	12	16	24	2	<b>35</b>
2002년	1	27	10	13	31	20	24	28	8	<b>29</b>
2000년	1	21	11	9	31	17	26	24	2	<b>29</b>
1998년	1	20	12	5	41	14	19	21	2	<b>36</b>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파트너, 경쟁력평가원 www.cvikorea.net, 2004.5.

33) 차동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7., p.47.

- 그리고 IMD의 국가경쟁력결정에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평가기준은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사회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도국지위를 결정하는 현대적 기준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IMD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98년 외환위기 직후의 순위인 36위와 거의 비슷한 3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의 2위, 홍콩의 6위, 대만의 12위, 말레이시아의 16위, 중국의 24위, 태국의 29위에 비해서도 훨씬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2) 비경제관련 지표

- 무역의존도는 한나라의 경제가 대외경제부문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기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나타내게 됨
  -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1.58로 수출의존도 32.03과 수입의존도 29.55의 합으로 나타냄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지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는 미국(18.47), 일본(20.00), 호주(31.81), 영국(38.16)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선진국들과의 사회구조와는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아 경제구조가 대내외적 충격이나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큼을 의미함

<표 4-6> 주요국의 무역의존도

(2003년 기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중국	대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수출 의존도	6.59	11.08	14.17	16.95	31.06	50.39	26.42	14.84	22.65	<b>32.03</b>
수입 의존도	11.88	8.92	17.64	21.21	18.42	44.48	28.51	10.29	10.65	<b>29.55</b>
무역 의존도	18.47	20.00	31.81	38.16	49.48	94.87	54.93	25.13	33.30	<b>61.58</b>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각국의 수출액과 수입액 수출액+수입액을 GDP로 나누어 계산

- 인간개발지수는 UNDP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인간개발 개념의 핵심은 복리(well-being)수준이며, 이 지표는 소득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 인간개발지수는 인간개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측면인 수명, 지식, 생활수준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평균적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간개발복합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라고도 하며, 평균수명, 교육성취도, 1인당 실질 GDP 등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됨

<표 4-7> 주요국의 인간개발지수

(2002년 기준)

	미국	일본	호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지수	0.939	0.938	0.946	0.903	0.768	0.902	0.802	0.775	0.853	<b>0.888</b>
순위	8	9	3	23	76	25	53	72	34	<b>28</b>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888로 2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인 미국(0.939, 8위), 일본(0.938, 9위), 호주(0.946, 3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0.903, 23위), 싱가포르(0.902, 25위)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는 실정임
- 생활수준을 나타내 주고 있는 의료종사자수, GDP대비 보건지출비, 교사 1

인당 학생수, 인구노령화 지수,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등의 지표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표 4-8> 참조)

- OECD 회원국중 인구 만명당 의사수를 의미하는 의료종사자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5명으로 OECD 국가들중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음
  -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리스의 경우 44명으로 가장 많고, 벨기에 39명, 대부분 선진국들은 30명 이상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GDP대비 보건지출비와 1인당 보건지출의 경우도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선진국들과는 현격한 격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인당 보건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532달러인데 비하여 미국과 같은 경우는 4,887달러로 9배 이상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실정임
- 인구노령화 지수의 경우 일본(116.8), 독일(105.6), 스페인(115.2), 이탈리아(126.5)와 같이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경우는 우리나라(34.3)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개도국 그룹으로 분류되는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14.3 과 19.2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균수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이 신장되어 76.6세이지만 역시 전통적인 선진국들(일본 82.4세, 스웨덴 80.6세, 호주 79.6세, 독일 78.9세)에 비하면 낮은 편임
- 영아사망률의 경우도 선진국들의 경우 3, 4명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명으로 OECD 국가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상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일지라도 다른 선진 회원국들에 비하여 여러부문에서 경제발전이나 생활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8>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의료 종사자수 (명)	GDP대비 보건지출비 (%)	1인당 보건지출 (US\$)	교사 1인당 학생수	1인당 GDP	인구 노령화 지수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한국	15	6.0	532	21	12,628	34.3	76.6	6
일본	19	8.0	2,627	8	33,648	116.8	82.4	3
캐나다	21	9.5	2,163	9	23,536	65.9	79.5	5
멕시코	15	6.1	370	10	6,052	14.3	73.8	26
미국	27	13.9	4,887	14	37,368	56.6	78.4	6
오스트리아	32	8.0	1,866	10	31,185	93.5	79.3	5
벨기에	39	8.9	1,983	16	29,250	98.5	79.6	4
체코	34	7.4	407		8,343	84.3	76.6	5
덴마크	34	8.4	2,545		39,504	82.2	77.4	5
핀란드	31	7.0	1,631		31,093	82.9	78.9	4
프랑스	33	9.6	2,109	16	29,240	85.3	79.7	5
독일	33	10.8	2,412	8	29,138	105.6	78.9	4
그리스	44	9.4	1,001	20	15,780	116.5	79.0	6
헝가리	29	6.8	345	15	8,444	86.4	73.1	8
아이슬란드	34				36,207	50.8	79.9	4
아일랜드	22	6.5	1,711	15	37,639	52.6	77.8	6
이탈리아	43	8.4	1,584	22	25,570	126.5	79.2	5
룩셈부르크	25				58,057	77.8	78.7	5
네덜란드	33	8.9	2,138	11	31,717	74.6	78.8	4
노르웨이	30	8.0	2,981		48,732	77.8	79.7	4
폴란드	22	6.1	289	23	4,894	63.4	74.9	8
포르투갈	32	9.2	982		14,629	93.5	77.0	6
슬로바키아	36	5.7	216		6,016	58.3	74.5	7
스페인	31	7.5	1,088	14	20,426	115.2	79.2	5
스웨덴	30	8.7	2,150	11	34,002	95.8	80.6	3
스위스	35	10.7	3,573		37,331	96.1	79.6	5
영국	20	7.6	1,835	21	30,293	83.0	79.0	5
터키	13	6.9			3,361	19.2	71.7	33
오스트레일리아	25	9.2	1,741		25,599	59.7	79.6	5
뉴질랜드	22	8.3	1,073	15	19,923	50.9	78.5	6

주1) \* 의료종사자수는 인구 만명당 의사수를 의미함.

\* 한국은 2002년/일본,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는 2000년/미국은 1999년 기준이고 나머지국가들은 2001년 기준임.

주2) GDP대비 보건지출비와 1인당 보건지출은 2001년 기준임.

주3)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함.

주4) 1인당 GDP는 2003년 기준임.(단, 캐나다, 폴란드, 스위스는 2002년 기준임.)

주4) 인구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x100

주5)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은 2000~2005년기준이며, 영아사망율은 1년간 영아(1세미만)사망자수를 당 해연도의 총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3.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

-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03년 기준 353만명으로 세계 65위이며, 세계에서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85,102만 8천명)이며, 다음이 인도(55,659만 2천명), 인도네시아(9,259만 6천명) 순임
  - 2003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92만 5천명으로 세계 26위임
  -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농가인구비중은 7.4%로 세계 175위이며 세계에서 농가인구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부탄(93.7%), 네팔(92.9%)순임
  
- OECD 회원국중 2003년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353만명으로 6위이며,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2,244만 2천명), 터어키(2,063만명), 폴란드(678만 5천명) 순임
  - 2003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OECD 회원국중 9위임
  - 농가인구비중은 7.4%로 OECD 회원국중 12위이며, OECD 국가에서 농가인구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터어키(28.9%)이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 3.2%임

<표 4-9> 전체인구중 농가인구의 비중

(단위 : 천명, 2003년)

국가		총인구	농가인구	(순위)	농가인구비중
세계	중국	1,311,709	851,028	1	64.9
	인도	1,065,462	556,592	2	52.2
	인도네시아	219,883	92,596	3	42.1
	방글라데시	146,736	77,387	4	52.7
	파키스탄	153,578	75,883	5	49.4
	<b>한국</b>	<b>47,925</b>	<b>3,530</b>	<b>65</b>	<b>7.4</b>
OECD 회원국	멕시코	103,457	22,442	1	21.7
	터어키	71,325	20,630	2	28.9
	폴란드	38,587	6,785	3	17.6
	미국	294,043	5,944	4	2.0
	일본	127,654	4,132	5	3.2
	<b>한국</b>	<b>47,925</b>	<b>3,530</b>	<b>6</b>	<b>7.4</b>

주) 농가인구는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는 모든 개인으로 농업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 한국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농가의 가구원수임.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195만명으로 세계 6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51,057만 3천명)이며, 다음이 인도(27,351만 5천명) 순임
  - 2003년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8.5%로 세계 164위이며, 세계에서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부탄(93.6%)이며, 다음이 네팔(92.9%) 순임
  - 2003년 우리나라의 전체경제활동인구는 2,291만 6천명으로 세계 25위임
- OECD 국가중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는 195만명으로 6위이며, OECD 회원국중에서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터어키(1,477만 9천명)이며, 멕시코(848만 4천명), 폴란드(407만 3천명)순임

<표 4-10>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2003년)

국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	(순위)	농림어업비중
세계	중국	786,475	510,573	1	64.9
	인도	469,518	273,515	2	58.3
	인도네시아	108,465	50,254	3	46.3
	방글라데시	74,834	39,466	4	52.7
	베트남	43,235	28,582	5	66.1
	<b>한국</b>	<b>22,916</b>	<b>1,950</b>	<b>60</b>	<b>8.5</b>
OECD 회원국	터어키	33,537	14,779	1	44.1
	멕시코	43,068	8,484	2	19.7
	폴란드	20,210	4,073	3	20.2
	미국	150,008	2,848	4	1.9
	일본	68,201	2,309	5	3.4
	<b>한국</b>	<b>22,916</b>	<b>1,950</b>	<b>6</b>	<b>8.5</b>

주)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는 농업, 임업, 수렵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임. 한국의 경우는 15세 이상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임.

- 우리나라의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부문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8.5%로 OECD 회원국중 9위이며, OECD 회원국중에서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터어키(44.1%)이며, 다음이 폴란드(44.1%), 멕시코(19.7%)순임
  -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부문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각각 1.9%와 3.4%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에서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186만 3천ha로 세계 94위이며, 세계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으로 17,806만 8천ha이고, 다음이 인도(17,011만 5천ha), 중국(15,395만 6천ha) 순임
- 국토면적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18.7%, 미국 18.5%, 인도 51.7%임

<표 4-11>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중

(단위 : 천ha, 2002년)

국가		국토면적	경지면적	(순위)	경지면적비중
세계	미국	962,909	178,068	1	18.5
	인도	328,726	170,115	2	51.7
	중국	959,805	153,956	3	16.0
	러시아	1,707,540	125,300	4	7.3
	브라질	851,488	66,580	5	7.8
	<b>한국</b>	<b>9,959</b>	<b>1,863</b>	<b>94</b>	<b>18.7</b>
OECD 회원국	미국	962,909	178,068	1	18.5
	오스트레일리아	774,122	48,600	2	6.3
	캐나다	997,061	45,879	3	4.6
	터어키	77,482	28,523	4	36.8
	멕시코	195,820	27,300	5	13.9
	<b>한국</b>	<b>9,959</b>	<b>1,863</b>	<b>21</b>	<b>18.7</b>

주) 경지면적에 목초지는 포함되지 않음.

-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86만 3천ha로 2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중 가장 경지면적이 넓은 나라는 미국으로 17,806만 8천ha이고,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 4,860만ha, 캐나다 4,587만 9천ha순임
  - 국토면적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18.7%, 미국 18.5%, 오스트레일리아 6.3%, 캐나다 4.6%임

<표 4-12>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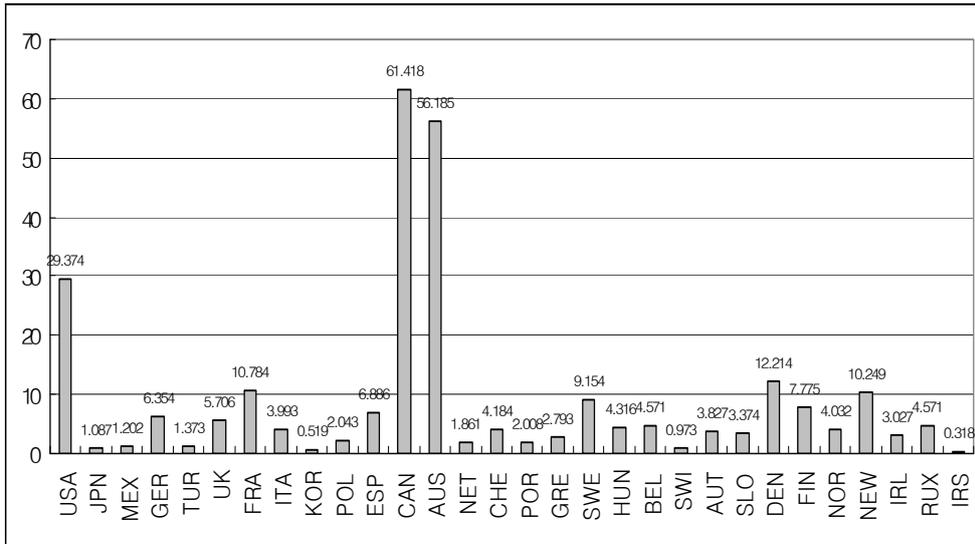
(단위 : ha)

국가	2000	2001	2002	세계순위	OECD 순위
캐나다	58.142	59.894	61.418	1	1
오스트레일리아	57.697	58.668	56.185	2	2
미국	28.380	28.673	29.374	3	3
덴마크	11.388	11.856	12.214	4	4
프랑스	9.855	10.313	10.784	5	5
<b>한국</b>	<b>0.469</b>	<b>0.477</b>	<b>0.519</b>	<b>139</b>	<b>28</b>

주) 순위는 2002년 기준임

- 우리나라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2002년 0.52ha로 세계 13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로 61.42ha이며,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 56.19ha, 미국 29.37ha순임
- OECD 회원국중에서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가 28위이며, 회원국중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이고,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임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인 캐나다 61.418ha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0.519ha로 캐나다의 0.85%에 불과하고, 호주의 56.185ha에 비하면 0.92%, 미국의 29.374ha에 비하면 1.77%에 해당하여 선진국들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로서 선진국들의 농업부문에 비하여 절대적인 열세임
- OECD 회원국의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지면적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그림 4-3>임

<그림 4-3> OECD 회원국의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지면적(2002년 기준)



- 200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은 5,469억달러로 세계 11위이며, 2001년 농림어업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임
  - 세계에서 국내총생산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2002년에 104,808억달러이며, 2001년 미국의 농림어업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임
  - 2001년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국내총생산액 96,700만달러중 농림어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은 10위이며, 농림어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임
  - OECD 회원국중에서 국내총생산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국내총생산액중 농림어업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 국내총생산액 1,476억달러중 1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13> 국내총생산액 및 농림어업 비중

(단위 : 억달러, %)

국가	2000	2001	2002	세계순위	OECD순위
미국	98,170	101,008(2%)	104,808(2%)	1	1
일본	47,445	41,634(1%)	39,767(1%)	2	2
독일	18,703	18,557(1%)	19,861(1%)	3	3
영국	14,393	14,309(1%)	15,637(1%)	4	4
프랑스	13,098	13,207(3%)	14,383(3%)	5	5
한국	5,118	4,820(4.7%)	5,469(4.5%)	11	10

주) 순위는 2002년 기준임. ( )의 값은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국내총생산액이 2002년기준이면 농림어업비중은 2001년 기준임

- 농가교역조건이란,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과 구입하는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농가가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농산물이고 농가가 구입하는 것은 소비재와 농업투입재이므로 대부분 공산품 또는 가공식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가교역조건은 농산물 가격과 공산품 가격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민의 가정생활과 생산활동의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됨
  -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눈 값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농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등 공산품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은 안 오르거나 적게 오른다는 의미로 농민 생활이 힘들고 농업생산도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가교역조건을 보게 되면, 1990년 113.7, 2000년 100.0, 2002년 101.0, 2004년 96.8로 점차적으로 농가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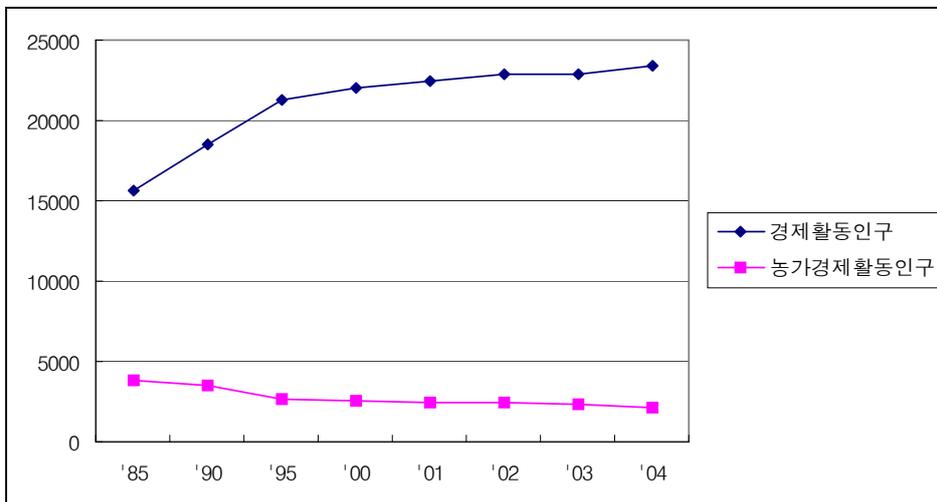
<표 4-14> 농가교역조건

(2000=100)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농가판매가격지수	67.3	91.3	100.0	110.7	119.8	116.5
농가구입가격지수	59.2	78.4	100.0	109.6	114.7	120.3
농가교역조건	113.7	116.3	100.0	101.0	104.4	96.8

- 2004년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3,370천명으로 1985년의 15,592천명, 1990년 18,539천명, 1995년 21,288천명, 2000년 22,069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985년 기준 50% 증가하였으며 1990년 기준으로 26% 증가, 1995년 기준으로 9.8% 증가, 2000년 기준 5.9% 증가하였음
- 2004년의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인구는 2,150천명으로 1985년 3,847천명, 1990년 3,476천명, 1995년 2,702천명, 2000년 2,535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율을 보게 되면 2004년 현재 1985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 기준 38% 감소, 1995년 기준 20% 감소, 2000년 기준 15%감소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업경제활동인구는 2,150천명으로 UR 협정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한 1995년의 2,702천명에 비해 552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0%을 보여주고 있음(동기간동안 경제활동인구는 2,082천명으로 9.8%증가하였음)
- 이는 새로이 추가되는 젊은 경제활동인구중 농업부문으로의 진입은 없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그림 4-4> 경제활동인구와 농가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



<표 4-15>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

(단위 : 천명, 천호, %, 천ha)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경제활동인구	15,592	18,539	21,288	22,069	22,877	22,916	23,370
농업경제활동인구	3,847	3,476	2,702	2,535	2,420	2,292	2,150
총가구수	9,571	11,355	12,958	14,312	15,064	15,298	15,539
농가구수	1,926	1,767	1,501	1,383	1,280	1,264	1,240
농가구구성비	20.1	15.6	11.6	9.7	8.5	8.3	8.0
총경지면적	2,144	2,109	1,985	1,889	1,863	1,846	1,836
호당경지면적	1.11	1.19	1.32	1.37	1.45	1.4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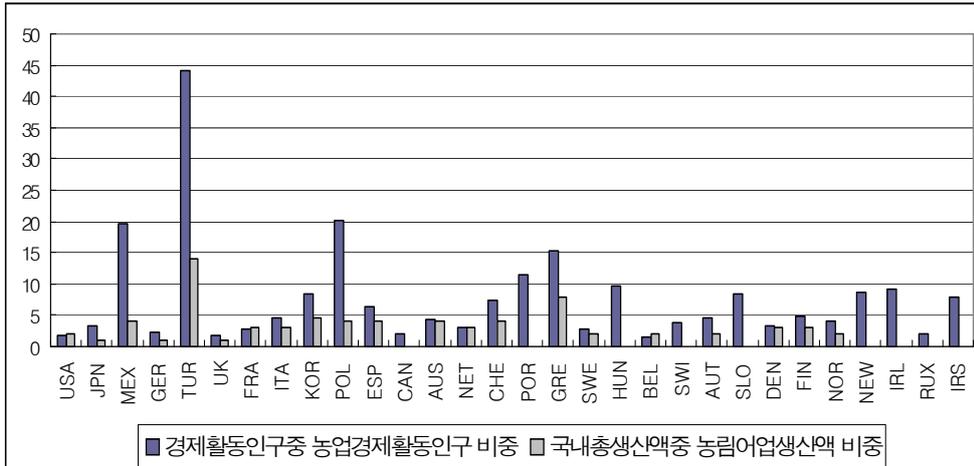
\* 단 호당경지면적은 ha 임.

-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총가구수중 농가가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85년 총가구수는 9,571천호이고 농가가수는 1,926천호로 전체가구수에서 농가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었으나, 2004년의 총가구수는 15,539천호이고 농가가수는 1,240천호로 전체가구수에서 농가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함
- 농업인구와 농가가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경지면적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 이유는 총경지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표 4-16>은 GDP 기준 경제성장률과 농림어업성장률을 비교한 표임
  - 200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8.5%임에 반해 농림어업성장률은 1.2%로 농림어업을 제외한 부문의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농림어업부문은 성장은 극히 미약했음을 알 수있음
  - 2002년과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7.0%, 3.1%임에 비해 농림어업은 “-”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표 4-16> 경제성장률과 농림어업성장률

	2000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8.5	7.0	3.1	4.6
농림어업성장률(%)	1.2	-3.5	-5.3	7.4

<그림 4-5> OECD 회원국의 농업경제활동인구비중과 농림어업생산액 비중



- <그림 4-5>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농업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과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임
  - 멕시코나 터어키, 우리나라, 폴란드, 그리스 같은 경우 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총생산액에서 농업부문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반면에 미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제활동인구비중에 비하여 농림어업생산액 비중이 더 큼을 보여주고 있어 농림어업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가지고 도농간의 소득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 1990년에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11,319천원, 농가소득은 11,026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은 97%로 도농간의 소득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UR 협정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WTO가 출범한 1995년의 경우에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2,933천원, 농가소득은 21,803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95%로 도농간의 소득차이가 크지 않았음

<표 4-17>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천원)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농가소득(A)	11,026	21,803	23,072	24,475	26,878	29,001
농가부채	4,734	9,163	20,207	19,898	26,619	26,89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B)	11,319	22,933	28,643	33,509	35,280	
(A/B)	97%	95%	81%	73%	76%	

-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81%, 2002년에는 73%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3년에는 76%를 보이고 있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존재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모든 지표들을 보게되면 우리나라가 UR 협정 당시보다 크게 악화된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UR 당시 인정받았던 한국농업의 개도국지위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움

## 제 5 장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관련 주요국의 입장

### 1. UR 협정 체결과정에서 주요국의 입장

- 전후 세계 무역질서는 자유무역과 무차별원칙을 표방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기본 축으로 하여 유지·발전되어 왔음
-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합의를 하여 전후 세계 경제성장에 괄목할만한 공헌을 하여 왔으며, 특히 1960년대의 케네디라운드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의 동경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음
-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 세계의 무역질서는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무색할 정도의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교역질서는 크게 왜곡되기 시작하였음
  -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세계교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고, 이것이 UR 협상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 UR 협상이 개시된 1986년 이후 농산물 분야는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로서 종전과는 달리 대폭의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금 감축 등이 동시에 논의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이 제시된 관계로 수많은 난관을 거치게 되었음
- 농산물협상에서 제시되었던 3대 의제, 즉 농산물의 예외 없는 시장개방, 농업보조금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금 규제의 주장은 미국과 EC의 과도한 농업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수출보조 감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충분하고 농산물 수출입국 각자의 통일된 행동과 나름대로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제안되었음

- UR 전체협상의 타결에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농산물협상은 의견이 제시되고 조율과정을 거쳐서 최종합의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sup>34)</sup>,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주요국의 주장을 정리하고자 함
  - 제1단계는 각국의 입장이 개선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보는 단계로서 1986년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서부터 1989년 중간평가 합의까지의 기간
  - 제2단계는 각국이 제안한 협상안을 참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을 도출하고 다듬는 단계로서 1989년 중간평가 이후 1991년 2월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 EC가 공동농업정책을 UR 협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기간까지
  - 제3단계는 협상타결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행안과 농업개혁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던켈 초안 작성 이후 1993년 12월 협상의 완전타결까지

### 1) 제1단계 협상 : 주요국의 제안

- UR 협상에 임할 당시 각국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
  - 미국은 10년간 각국의 모든 농업보호를 철폐하자는 이른바 “Zero Option”의 자세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등장한 케언즈 그룹 국가들(농업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국가들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등 14개국)의 입장과 일치하게 되었음
  - EC의 입장은 보다 온건하였으며, EC는 공동농업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개혁파와 공동농업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파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고 개혁파도 미국과 같은 급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음
  - 한국과 일본 등은 급격한 시장개방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음

---

34) UR 협정당시 주요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우루과이 농산물협상 백서』(1994.11)의 내용을 주로 하여 정리한 것임.

-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에는 88개 GATT 회원국, 15개 비회원국, 19개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였음
  -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ASEAN, 남미, 아프리카 등 열대산품 생산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농산물과 열대산품 교역의 자유화를 주장
  - EC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
  - 결국, 협상초기부터 미국과 EC의 힘겨루기가 진행됨
  - 한국은 UR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수입개방폭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급격한 수입개방의 방지에 협상력을 집중시킨다는 입장
    - 따라서 한국농업의 특수성, 농업발전의 낙후성 등을 들어 농업개도국으로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급격한 농업개방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방어적 입장에 서게 됨
    - 농업구조가 취약한 개도국들에게는 농업구조조정 시간이 필요하고 식량안보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무역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은 협상초기에 EC와 일본은 물론 일부 북구 및 개도국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음

## 2) 제2단계 협상 : 협상의 일반원칙 도출

- 협상은 분야별·의제별로 각국의 제안을 듣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AMS, 관세화, GATT 규정 강화, 동식물 검역, 개도국우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EC와 미국 등 국가별 주장이 대립하게 되었음. 의제별로 각국의 제안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국경보호

- UR 농산물협상에서 국경조치는 관세화[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여 대체 : 관세상당치=(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 관세인하 및 양허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핵심의제는 관세화임

- 관세화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화하자는 제안임
- EC는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고 이를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미국측 제안이 농산물 무역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무역을 자유화시키는 유용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원칙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상품간의 보호재균형(Rebalancing)을 고려한다면 관세화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임
- 케언즈그룹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안과 기본입장에 있어서 유사하나 캐나다의 경우 예외 없는 관세화 문제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
- 일본의 경우는 관세화는 자국농업에 영향이 크므로 기초식량과 11조2항(C) 적용품목의 관세화는 곤란하다는 입장
- 한국의 경우는
  - 관세화는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전환과 관세상당액의 상당수준을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11조2항(C)에 따른 예외조치 및 기타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농업에 커다란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 한국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일괄적으로 관세화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NTC 대상품목 인정,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11조2항(C) 운용 허용의 조건하에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또한 관세화 대상품목의 관세화 방법에 있어서도 수입국 농업정책상 신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2) 국내보조

- 국내보조의 경우도 각국의 농업사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보조 감축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름

- 미국은 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EC,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일본 등으로 구분
  - 미국안에는 케언즈그룹이 EC안에는 오스트리아, 북구제국이, 일본안에는 한국, 스위스 등이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주장은 국내보조금 감축을 통해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시키자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완전철폐한다는 원칙하에 각종 농업정책을 ① 철폐대상정책(Red Light) ② 규제대상정책(Amber Light) ③ 허용대상정책(Green Light) 등 3가지로 분류
- EC의 국경조치와 국내농업정책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국내보조이건 국경조치이건 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총괄적 개념(Global Concept)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국경조치의 감축은 독립된 약속사항이 아니라 AMS감축을 통해 불가피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
- 일본안은 국내농업정책을 ①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것 ②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것 ③ 지역·환경정책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 등 3가지로 분류하여 ①과 ③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②만을 GATT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자는 입장
- 한국은 농산물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에 한하여 일정수준을 감축하되 규제대상 정책은 국내가격 및 소득지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보조금은 허용대상정책으로 하자는 입장
  - 또한 AMS를 통하여 국경조치와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을 포괄하여 교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정수준을 감축하되, 농산물 생산, 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군별 접근을 주장하였음
  - 특히 한국 농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수입개도국이기에 때문에 최종감축 약속과 이행기간에 있어서 개도국우대 조치를 요구하고 NTC 대상품목의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였음

### (3) 수출보조

- 미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
  - 5년간에 걸쳐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
  -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를 위한 보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주장하였음
  
- EC의 입장은 미국과 반대로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반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음
  - 왜냐하면 EC의 공동농업정책에는 수출보조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C로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여야 만이 UR 협상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써 우선 현재수준에서 수출보조금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으로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여 미국안과 유사함
  
-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는 주장임

### (4) 개도국우대

- 개도국우대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개도국우대 조치를 인정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였음

- 한국과 같이 농업이 취약한 개도국은 수입자유화를 확대하되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선진국과는 달리 우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
  - 이를 위해 개도국우대 조치는 반드시 GATT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되 구체적으로는 개도국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정책 선택의 자율성 인정, 농업발전 단계를 고려한 감축의무 이행의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 반면에 선진국은 선발개도국과 저개발개도국을 분리 취급하려는 의도를 보여 한국의 경우 개도국우대 조치 인정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음

#### (5)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 NTC)

- 미국은 농산물 수입국이 주장하는 식량안보는 식량자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식량안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
- 케언즈 그룹도 미국안과 유사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적정 재고유지와 공급선 다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
- 일본은 최대 수입국으로서 NTC 중 식량안보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국내 농업수준 유지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므로 합의된 전체 자급률 범위내에서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GATT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 한국은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소시장 접근을 또는 최소자급율로 표시되며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 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 UR 농업최종협정문(1994)의 기초가 된 던켈초안(Final Draft Act; 1991.12)에는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 등 각 분야별 협상요소들이 제시되었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공란으로 비워져 있던 감축폭, 이행기간, 개도국우대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어 협상 최종문서로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었으며, 던켈초안에서의 개도국우대 조치사항은 <표 5-1>에 정리되어 있음
  - 던켈초안에 제시된 개도국우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선진국보다 낮은 감축률 및 이행기간을 허용하면서 감축률은 선진국의 2/3수준까지로 하고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7년보다 긴 10년으로 함
    - 둘째,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선진국이 모든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양허의 무가 있음에 반하여 특히 양허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서 개도국은 상한설정(Ceiling Binding)을 할 수 있음
    - 셋째, 국내보조에 대한 개도국우대 조치로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지원 조치는 개도국 개발정책의 일환이라는 고려하에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 저소득 영세농가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보조를 포함한 농업투입재 보조 등은 선진국과 달리 감축에서 면제됨을 규정하고, 국내보조감축의 의무면제(De minimis) 상한을 선진국의 5%에서 10%로 완화
    - 넷째,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감축대상으로 분류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 및 국내운송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개도국에 한해서 감축 이행이 면제됨
    - 다섯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으나 개도국중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감축의무가 면제됨

<표 5-1> 덤켈초안에서 개도국우대 조치 사항

구분	규정	개도국우대
<시장개방분야> 관세양허 관세화 감축률 최소시장접근 이행기간	- 통상관세만으로 부과되는 비양허 품목은 1986.9.1 실행세율로 양허 -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상 당액으로의 전환 - 품목별 최소 15%이상 단순평균 36% - 3%에서 5%까지 증량 - 1993 ~ 99년(7년)	- 상한설정양허(Ceiling binding) 허용 - 개도국의 국제수지조항(18조)에 의한 수량수입제한 허용 - 품목별 최소 10%이상 단순평균 24% 이상 - 2%에서 3.3%까지 증량 - 1993 ~ 2002(10년)
<국내보조분야> 허용대상정책 감축의무면제 (De minimis) 감축률 이행기간	- 정부서비스 정책 및 허용대상 직접지불정책으로만 규정 - 농업총생산액 혹은 당해농산물 생산액의 5%이내 보조액 - 20% - 1993 ~ 99년(7년)	- 허용대상정책의 범위 확대 · 농촌·농업개발을 위한 일반적 투자 보조 · 마약작물 작목전환 지원 · 저소득영세농가에 대한 현물, 현금 형태의 투입재 보조 - 10%로 상한 확대 - 13.3% 이상 - 1993 ~ 2002(10년)
<수출보조분야> 감축대상 수출보조 감축률 이행기간	-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 6개 유형 - 물량 24%, 재정금액 36% - 1993 ~ 99년(7년)	-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축소 · 수출상품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지원 · 수출농산물의 국내운송비 지원 위의 2개 감축대상보조를 허용함 - 물량 16%, 재정금액 24% - 1993 ~ 2002(10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1994.11, p.69.

### 3) 제3단계 협상 : 구체적인 농업개혁의 이행계획 수립

- 1991.12.20 GATT 덤켈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이 제시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덤켈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 1991년 12월에 제출된 던켈 최종초안에 대한 각국의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3일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개진되었음
  - 미국은 최종초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던켈협상전략에 따라 서비스분야 특히 금융분야의 시장접근 관련 협상이 중요하며 협상최종결과에 이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상결과를 수락할 수 없음을 표명
  - EC는 역내 무역 및 농업장관 회의결과에 따라 최종초안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폭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던켈총장의 협상전략을 지지
  - 호주, 아르헨티나 등 케언즈 그룹은 UR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종초안을 협상의 기초로 해야 하며 최종초안의 수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던켈협상 전략에 의한 초안의 수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강조
  - 일본은 모든 협상이 종결된 후에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농산물 분야에서는 특히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수용은 상당히 곤란하고 특정사항의 조정필요성 검토시 일본의 관심사가 반영되길 희망하였음
  - 한국은 최종초안의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수입국과 수출국 및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예외 없는 관세화는 식량 순수입국의 농업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수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식량에 대한 예외가 설정되도록 최종초안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
  
- EC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확정으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협상 주요국인 미국, EC 및 한국, 일본 등 각국의 기존입장 고수와 각국의 정치일정 등 외부여건으로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함
  - 협상의 양대 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에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 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1992.11.20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어 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 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음

<표 5-2> 단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구분	단켈최종초안	미·EC간 합의사항
<시장개방분야> - 관세화 범위 - 최소시장접근 - 이행기간	예외 없는 관세화 3% --> 5% 중량 1986~88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1993년부터 6년간	단켈초안 수용 단켈초안 수용 단켈초안 수용 1994년부터 6년간
<국내보조분야> - 허용대상정책 - 이행기간 - 보조금감축방법	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준 충족하 허용화 제시 1993년부터 6개년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 (Product Specific AMS)	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 허용화 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1994년부터 6개년 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합계하여 감축 (Total AMS)
<수출보조> - 수출보조감축방법 - 이행기간	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감축 1993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 36%, 물량기준21% 동시감축 1994년부터 6년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개서, p.83

- 1992년 11월 미·EC간 블레어 하우스 협정이 타결되면서 UR 협상타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단켈초안의 수정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못하여 UR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
  - 1993년 4월 27일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UR 협상의 연내타결을 목표”로 신속처리권한(Fast Tract Authority)의 연장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UR 협상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7월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에서의 “UR 협상의 연내타결 합의”와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4개국(Quad)간의 “공산품분야 포괄 관세인하 합의” 도출에 힘입어 연내 협상타결의 전기를 마련함
  
-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는
  - 첫째, 미·EC간 ‘블레어 하우스 협정’에 대한 수정문제
  - 둘째, 한국의 핵심이해가 걸린 ‘포괄적 관세화’의 예외 인정문제
  
- 한국과 주요 이해 당사국간의 양자협상에서 드러난 쌍무적 쟁점으로는
  - 쌀을 포함한 기초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화 예외문제

- 개도국지위 인정문제
- BOP 품목의 관세화 문제
- 양허범위문제
- 기타 시장접근분야 세부쟁점
- 국내보조분야 세부쟁점

<표 5-3> 농산물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

구분	주요 협상 일정
농산물협상 타결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레어 하우스 협정에 대한 수정문제</li> <li>· EC 역내에서의 의견조정 문제</li> <li>· 미·EC간 재협상의 문제 : 협상타결의 관건</li> <li>- 포괄적 관세화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li> <li>·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어떻게 무마 또는 조정,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li> </ul>
양자협상을 통해 드러난 한국과 이해당사국간의 핵심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화 예외문제</li> <li>· 쌀 등 NTC 15개 품목에 대한 처리</li> <li>- 개도국지위 인정문제</li> <li>· 한국의 개도국지위 인정문제</li> <li>- BOP 품목의 관세화문제</li> <li>· BOP 품목의 관세화 가능여부 문제</li> <li>- 양허범위문제</li> <li>· 협상대상 전품목에 대한 100% 양허</li> <li>- 기타 시장접근분야 세부쟁점</li> <li>· 기준년도 적용</li> <li>· 관세상당치 계산방법 등</li> <li>- 국내보조분야 세부쟁점</li> <li>· 기준년도 적용</li> <li>· 허용대상정책의 기준적용 문제</li> </ul>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게서, p.95.

○ 한국의 양자 및 다자협상의 주요 경과를 보면

- 관세화예외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총생산액의 75%에 달하는 15개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상당치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던 켈초안에 따라 모든 품목이 관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한국은 관세화의 원칙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화의 포괄성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극히 민감한 품목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어

- 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개도국지위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음
  - 한국은 현재 개도국그룹의 일원이며, 동시에 OECD 회원국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농업분야의 낙후성으로 농산물 측면에서는 개도국임을 강조
  - BOP 품목의 관세화에 대하여 미국은 던켈 초안상 BOP 품목이 관세화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관세화 할 수 없음을 주장
  - 한국은 BOP 품목의 관세화는 가능함을 주장

<표 5-4> 한·미간 양자협약의 주요 요지

구분	미국의 언급 요지	한국의 대응논리
개도국 우대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 불가 - 1996년 OECD 가입예정 - 연평균 9.6% 경제성장 - GATT 체제 수혜국 기술적으로 한국입장에 공감하나 정치적으로 한국의 개도국 우대인정은 곤란	농업분야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저개발 단계에 있는 바 개도국우대 필요 GATT 관행은 Self-selection 임
관세화 예외	포괄적관세화가 UR 농산물협상의 원칙임 - 이행계획서상 공산품목의 TE 제시 요구	일부 민간품목에 대하여 예외인정 필요 - 협상진전에 따라 추가적 제시 표명
양허범위	전품목에 대한 100% 양허가 필수적 - NTC 15개품목 이외에도 230여개 품목 미양허	공산품과의 형평성 100% 양허는 곤란 -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허확대검토용의
BOP 품목의 관세화	BOP 품목은 관세 불가 1997년까지 자유화	BOP 품목의 관세화 가능 - UR 협상결과에 일치 - DFA 주석조항이 관세화 금지는 아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 관세화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유화 용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1994.11, p.69.

- 1993년 12월 최종타결 직전까지의 양자협약과정에서 미국, EC는 한국의 개도국지위 문제를 거론하여 최대한의 양허를 얻어내려고 하였음
- 그밖에 우리에게 양자적으로 양허를 요청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이었음

- 1993년 12월 15일 UR 협상이 끝남에 따라 각국은 UR 농업협정문의 시장 개방 원칙과 주요 국가와의 양자협상 합의결과를 반영한 법적 형식을 갖춘 최종 시장개방계획(Country Schedule; CS)을 제출
  - 1994년 3월 제출된 한국 이행계획서는 UR 농산물협정문 및 이행계획서 작성지침(Modality)과 주요국과의 양자합의결과 등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개도국으로 작성·제출하였음

## 2. DDA 농업협상 진행중 주요국의 입장

- 2001년 11월 Doha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우대 조항에 대한 검토를 결정하고 개도국우대 조항 검토작업을 위하여 CTD Special Session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
  - 현행 개도국우대 조항의 효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 규정들의 명확성, 효율성,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WTO 협정상의 모든 개도국우대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함(각료선언문 제44항)
  - 이러한 맥락에서 이행결정문에 명시된 개도국우대 관련 작업프로그램을 승인함
- 도하각료선언에 따른 CTD의 3가지 임무
  - S&D 조항 중 기존의 의무적 규정과 비의무적 규정을 식별하고, 의무적이라고 여길 수 있을만한 법적 관행적 암시를 연구하며, 의무적 규정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규정을 판별
  - S&D 조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적 방법을 조사하고, 개도국 특히 LDCs가 관련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원활한 정보흐름을 포함한 보조방법을 고려
  - S&D 조항이 WTO의 전체 구조와 통합될 방안의 모색
- CTD에서 실제 논의되는 4가지 카테고리
  - 협정별 이슈(Agreement-specific issues) : WTO 각 협정별 개도국 우대

## 조항 검토

- 교차 쟁점별 이슈(Cross-cutting issues) : 모든 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조항의 검토(예를 들면, S&D의 원칙과 목적, 일관성, 벤치마킹, 이행 기간 등)
- 모니터링 기구 : 설립자체는 확정되었으나 시기와 기능 등 구체적 문제는 추후 검토
- 기타 문제 : WTO 원칙과 S&D 조항의 조화방안, 기타 여러 제도적 문제

## 1) DDA 개도국우대 분야(S&D)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S&D 조항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논의는
  - 아프리카 국가그룹과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입장과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되었음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우 주로 S&D조항의 의무화를 강조하며, 실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개도국우대 조항들에 대한 의무화, 명확화 및 실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함
  - 선진국은 S&D 조항은 WTO의 예외규정으로서 전체적인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라고 간주함
    - S&D 조항은 원칙 규정과 동급 규정이 아닌 하위 규정임을 강조
    - 따라서 조항별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일반적 당위성을 강조함
-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있음
  - S&D 조항의 적용에 있어 개도국을 세분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음
    - 선발개도국은 개도국의 세분화작업으로 인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
  - 대체적으로 개도국의 세분화에 반대하거나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 경향이 있음
    - 개도국간 연대에 영향을 미쳐 개도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표 5-1>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정리

개도국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mp;D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당연한 권리</li> <li>· S&amp;D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함</li> <li>· 타 국제기구와의 동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li> <li>· 각 협정별로 구체적으로 점검되어야 함</li> </ul>
선진국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mp;D는 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며 임시적 성격</li> <li>· 개도국 특혜가 권리의무의 이중성을 내포하지 않음</li> <li>· S&amp;D는 개도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li> <li>· S&amp;D의 의무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li> <li>· WTO 전체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함</li> </ul>

자료 : 농림부, 『WTO/DDA 개도국우대 관련 논의경과 및 쟁점』, 2003.1, p.28.

○ 우리나라의 입장은

- 전체적인 다자무역체제내에서 권리·의무의 조화 등 포괄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제안내용에 가까움
- 단,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시장접근품목의 대폭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제안하여 DDA 협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교차쟁점별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1) S&D 조항의 원칙 및 목적

- 선진국은 개도국우대 조항이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한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하에 동 조항을 일괄적으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
  - 개도국우대 조항은 다자무역체제에의 적응과 통합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하나임
  - 개도국의 수요를 감안, 개도국에 대해 단기간 의무를 유예하고,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한 개도국의 역량개발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임
- 개도국은 개도국우대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협정상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개발 관련 주요지표(benchmarks) 등의 평가를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동 지표를 바탕으로 개도국우대 조항의 운용과 구체적인 지표들의 개선을 연계시켜야 함

## (2) 개도국 분류 및 졸업

○ 개도국 분류 및 졸업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 파라과이는 권능조항에 의한 GSP의 제공이 공여국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 헝가리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개도국에 대한 GSP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헝가리의 관행은 개도국을 차별하는 결과가 됨
- 개도국간의 분류가 현행 체제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됨

○ 개도국 분류 및 졸업에 대한 찬성 주장은

-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은 동 이슈가 개도국우대 검토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S&D 검토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졸업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
  - 일본은 개도국우대의 형태는 협정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달라야함을 주장
  - 스위스는 LDC와 여타 개도국간 차별 및 신범주 설정 주장
  - EU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도국을 구분하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개도국지위로부터 졸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최근 보고서에서 졸업기준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입장을 유보
- 미국은 각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졸업 개념보다는 차등화(differentiation) 개념의 도입을 주장
  - 현행 협정에서도 농업 등 분야별 접근방식을 하거나, 금지보조금 유예기간과 같이 개도국을 세분류한 경우 등이 있음을 지적

- 개도국 분류 및 졸업에 대한 반대 주장은
  - 인도 등 다수 개도국도 개도국그룹의 연대를 위해 개도국 분류 및 졸업의 개념 도입에 대하여 반대
  -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 세분화 및 졸업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
    - 도하각료선언에는 이와 관련한 mandate가 없음
    -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러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경우 오히려 개도국 우대 강화방안에 대한 합의도출 지연 우려
    -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규범을 적용하면 WTO 체제의 일체성을 손상시키게 됨

### (3) 일관성(Coherence)

- 일관성(coherence)과 벤치마크(benchmarks)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합치하는 부분이 많음
- 아프리카 그룹은 개도국들의 각종 제안이 각 회원국들을 비롯한 WTO와 UNCTAD에서 모두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LDC 국가들은 WTO 내 및 국제기구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
  - 브레튼우즈 체제상의 조건들(Bretton Woods Conditionality, IMF의 대부조건 등)은 WTO 원칙들과 LDCs에 대한 새로운 우대조치들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UNCTAD를 비롯하 WTO의 무역, 부채 및 금융작업반과 무역 및 기술이전 작업반은 LDCs의 개발목표의 달성과 일관성을 장기적으로 평가
- 선진국들도 S&D 조항의 활성화를 위해 타 국제기구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4) 지표(Benchmarks)

- LDCs들은 개도국에 대해 제공된 S&D의 총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Benchmarks)를 구체적으로 제시
  - 수요 대비 WTO 회원국들이 제공한 자원의 총량
  - LDCs들의 총수출에서 새로운 수출상품의 가치(금액) 및 점유율 증가
  - 무역촉진 노력으로 인한 시장다변화의 수준
  - 자국의 관심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표준 설정에 최빈개도국들의 참여 정도
  - LDCs들의 수출기회 및 국내생산에 피해를 주는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정도
  - LDCs에서 생산된 가공 및 반가공 열대산품의 시장접근 장벽 및 조건

#### (5) 시장접근 개선

- LDCs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무관세쿼터는 점진적 폐지를 제안
-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개도국들 상호간의 무역장벽 완화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시장접근문제는 도하협상과 관련하여 개도국우대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다만 차별적인 시장접근의무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는 LDCs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일부 일차산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도하개발라운드의 협상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6) 경과기간(transitional period)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은 경과기간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부

적절하며, 실제 사회경제적 수준의 개발 등 본래 의도했던 목적의 성취와 관련된 지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선진국은 경과기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이고 무제한의 기간 확장에는 반대. 경과기간은 다자무역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임시적 장치임을 강조
- 우리나라는 경과기간은 한시적인 기간으로 사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 단, 동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경제의 개발지표들을 일정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7) 비구속적 S&D 조항들의 의무화

- 개도국 및 LDCs들은 모든 WTO 협정들에 많은 개도국우대 조항이 있지만 이행에 소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개도국우대 조항의 비구속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비구속적 S&D 조항들의 의무화에 매우 적극적임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우대 조항의 구속적인 의무화가 동 조항들을 이행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S&D 조항의 의무성, 비의무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라고 주장
- 한국의 입장은 전반적인 S&D 조항들에 대해 구속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금융자원면의 부담 및 관련 국내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봄
  - S&D 조항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S&D 조항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용대상국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WTO의 관련 협상기구나 위원회들을 통한 협상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8)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 개도국과 LDCs들은 상품무역의 촉진, 서비스의 생산과 수출기반의 개발·강화·다변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능하면 개도국에 비용부담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람
- 능력배양의 중요성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임
-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장벽의 제안시 개도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술설비의 제공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및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
  - 일본은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의 과거 성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진국들에게 금융이나 개별적인 의무부여 없이 WTO 향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기술지원이 지원국과 수혜국의 공동책임하에 상호 협력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의 입장은 기술지원이 지원국과 수혜국의 공동책임하에 협력적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함

### 3) 협정별이슈(Agreement-specific Issues)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개도국 및 LDCs들은 개도국우대 조항에 관한 일반원칙 뿐 아니라 주요 WTO 협정의 개별 조항별로 구속적 의무화, 이행기간의 연장 등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구체화하려는 광범위한 제안을 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개도국우대 조항의 전반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개개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초월하는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개도국우대 조항은 전체적인 WTO 협정들 속에서 그 위상과 기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개별조항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이를 활용한 개방적 무역정책의 추진 등 궁극적으로 WTO의 다자무역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대응
  
- 한국의 입장은 개별 S&D 조항에 대한 개도국 및 LDCs들의 제안내용이 우리나라와 중대한 현안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그 이유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 특별히 반대 입장을 밝힐 명분이 제안국측에 비해 대부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한편, 개별조항들에 대한 논의는 WTO의 관련 협상기구나 위원회에 맡기고, S&D에 관한 포괄적인 원칙과 목적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4) 모니터링기구(Monitoring Mechanism)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모니터링 기구에 대한 논의 배경은
  - 아프리카 그룹이 최초로 제의한 것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은 현실적으로 S&D 조항의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임
  - 선진국들도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WTO 일반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은 기정사실화 됨
  
- 모니터링 기구의 임무는
  - S&D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WTO의 각위원회에서 S&D가 상설의제로 다루

어지는지를 살피며, 일반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 모니터링 기구에 관련한 쟁점사항은

- 구조상 중도변경의 가능성은 대다수 국가가 동의하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이견이 있음
  - 선진국은 주로 기존 CTD의 정기 또는 특별회의에서 하자는 입장
  - 최빈개도국은 별도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 특히, 아프리카그룹은 S&D 이행을 감시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발족시기에 대해서도 국가간에 이견이 있음
  - 즉각적으로 개시하자는 국가
  - 우선은 S&D 조항을 강화한 후에 시간을 두고 발족하자는 국가
- 한국의 입장은 S&D 조항들의 이행 감독 및 평가기구의 설립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동시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다자무역체제에 스스로 통합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도 균형 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S&D 조항과 WTO 원칙의 조화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예외규정과 원칙규정과의 조화문제로서 특별히 선진국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개도국들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수준의 발언이 대부분임
  - 일반이사회는 CTD 특별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있음
  - 이 문제는 교차 쟁점별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차 쟁점논의 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제 6 장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전략과 대응방향

### 1.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협상전략

#### 1) 개도국지위 유지의 논리와 협상여건 및 필요성

##### (1) 개도국지위 유지의 논리

- UN, WTO, OECD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선언(Self-selection)의 원칙에 따라 이를 표명해 왔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나 일반적인 개도국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는 없었음
- 한 나라의 경제개발 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로 가장 일반적이고 국제수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1인당 GNI의 경우 2003년 현재 12,730 달러로 우리나라가 UR 협정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던 1993년의 8,177 달러에 비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NI의 1/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수준이 선진국에 버금간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지면적, 경제활동인구중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과 국내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농업구조와 관련된 지표들의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의 경우 우리나라는 0.519ha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인 캐나다의 61.418ha의 0.85%에 불과하고, 호주의 56.185ha의 0.92%, 미국의 29.374ha의 1.77%로서 우리나라의 농가는 지극히 영세함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중에서 농업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미국; 1.9%, 일본;

- 3.4%, 한국; 8.5%)에 비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2%, 일본; 1%, 한국; 4.5%)에 큰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선진국 들에 비하여 농업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해 볼 때 UR 협상이 진행될 당시에는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차이('90년; 97%, '95년; 95%)는 거의 없었으나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소득차이가 확대되어 2003년 기준 도 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76%에 불과하여 경제구조의 불균형 이 심함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하고 취약한데다가 UR 협상 당시 보다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는 절 실함
-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이미 농업구조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키워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함
- 우리나라는 농업구조 개선과 동시에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도 동시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농정의 신축성의 확보가 절실히 필 요하며
  -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가격보조수준이 감소한 시점 이 1인당 GDP가 2만달러 정도에 이를 때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단계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은 농업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줌
- 우리나라는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농업분야와 환경분야에서 개도국지 위를 인정받았는데 '97년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전반의 침체기를 거쳐왔고 2000년 이후 회복기에는 접어들었지만 지금 의 경제환경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와 크게 변화한 내용은 없 음

## (2) 개도국지위 유지 협상 여건

- UR 농업협상 당시에도 한국의 개도국 주장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국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 미국은 '93년 10월 양자협약에서 한국이 '96년 OECD 가입예정인 점등을 들어 한국의 개도국지위 인정이 곤란함을 언급하였음
  - EU도 '93년 12월 양자간 수석대표회의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93년 12월 UR 협상타결 막바지에 양자협상에서 BOP 품목의 양허 등 한국의 수입개방 확대 폭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국의 개도국지위를 인정하였고, '94년 3월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한국의 농업분야 개도국지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음
  
- UR 농업협상 때와 비교할 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96년 OECD에 가입했음지라도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가 한동안 침체기에 머무른 관계로 큰 변화가 없음
  - 그러나 1인당 GNI가 10,000불대에 진입해 있고,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전통적으로 개도국 그룹인 77 Group을 탈퇴했으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국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해 온 점 등이 개도국지위 유지를 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DDA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최근 USTR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했으므로 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다자간무역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였음
  - EU는 지난 2000년 한·미 쇠고기 패널에서 한국의 최소허용보조 비율이 10%인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개도국지위를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 선진국의 개도국 차등화 주장에 동조하는 파키스탄 등의 개도국이 우리나라

라의 개도국지위 주장에 반대의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선진국들은 다자차원에서 개도국 분류의 객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로서는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임

### (3) 개도국지위 유지 필요성

-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도국우대 관련 내용에서 너무 과다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개도국지위 상실시 엄청난 부담이 가중
- IMF 경제위기 이후 농업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농촌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므로, 개도국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으로 장기적인 농업구조조정과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2)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 (1)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기본전략

-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기본골격 합의 이후부터 Modality 작성 시기까지, Modality 작성 이후부터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홍콩 각료회의 이후부터 CS 제출시까지로 나누어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한국 농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민·관을 총동원하여 범정부적 외교활동 전개 (Low Key 수준)

-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등에서는 개도국여부를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자회의에서의 개도국분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sup>35)</sup>하여 논의자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고,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최종 양자협상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 (2)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제기되는 개도국 분류논의를 적극 차단하여야 함
  - WTO의 농업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OECD의 무역개발위원회(CTD) 등에서 개도국관련 논의가 있을 경우 기존의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
  - 같은 입장에 있는 멕시코와는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다만 한국,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으로 지목 받고 있는 선발개도국 중 싱가포르, 홍콩은 이를 수용할 분위기임을 감안하여야 함
    - 인도 등 영향력 있는 개도국과도 협조 강화
- WTO 농업협상에서도 이미 활동중인 특별품목(SP) Group과 같은 개도국 협의체에 적극 참여
- 마지막 단계에서의 양자협상을 대비하여 각국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야별·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보가능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다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활용
- 우리의 개도국 지위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Group 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차별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외교단을 구성하여 순회외교 등 우

---

35) 선진국의 개도국 분류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여 논의를 차단하고 있음 : ① 도하각료선언문에는 개도국 분류에 대한 위임사항(mandate)이 없으므로 DDA 협상에서 의제로 삼을 수 없음 ② 개도국 분류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경우 오히려 개도국우대 강화에 대한 합의도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③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규범을 적용하면 WTO 체제의 일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

- 리 농업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개발 개도국에게는 KOICA(국제협력사업단)를 통한 농업기술 등을 제공
-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전통적 동조국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수출선진국
  - 인도, 이집트 등 영향력 있는 개도국
  -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각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수출개도국
  - 기타 저개발 개도국
- 국내외 각국 외교단 및 한국 방문 농업관련 인사에게 현지시찰의 기회제공 등 국내에서의 우리 농업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
- 국내 각계, 각층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경주
-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타 협상분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 재계 등 비농업분야에 대하여도 우리 농업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소비자에게도 개도국지위 상실시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 부족 및 소비자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 농민들에게는 향후 국제농업추세를 감안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을 요청
  - 재계나 언론계 등에 대해서는 한국경제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농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득하여야 함
  - 왜냐하면 선진국 조건으로 새로운 농업협정 이행시 농업·농촌의 와해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경제전체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적극 홍보하여 DD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정부는 부처간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농업분야 개도국유지라는 협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통일된 세부협상전략을 유기적으로 수립

## 2) 개도국지위관련 최근 협상 및 향후 협상일정

### (1) 개도국지위 관련 최근 협상 동향

- OECD 각료회의(프랑스 파리, 2005.5.3~4)
  - 이번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회원국들은 소규모 각료회의를 가지고 그 동안 협상진전의 걸림돌이었던 종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 AVEs)에 대한 합의를 도출
  - G10 국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주요 5개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협상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고, 협상이 보다 투명하면서도 그룹간 이해가 골고루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수출경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수출보조도 철폐되어야 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대하고 공조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 WTO 농업국장(Mr. F. Wolter)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봄(2005.5.13.)
  - 다만 한국이 개도국으로 관심이 있고 idea가 있으면 G33에서 한국주도로 구체적 제안서(Concrete input)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G33은 Group으로서 너무 크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그리고 개도국들이 지금 단계에서 특별품목의 숫자를 먼저 들고나올 경우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봄

- WTO 농업협상의장(Tim Groser)과 농민단체장들과의 면담결과(2005.5.31)
  - 농민단체장들은 주요 5개국(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 EU) 중심의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NTC의 반영,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익의 균형된 반영, 한국의 개도국우대 필요성을 강조
  - 그로서 의장은 주요 5개국 위주의 협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한국의 개도국우대를 조급하게 주장하면 신뢰감을 잃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의 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 WTO 농업국장(F. Wolter)와의 최근면담에 의하면 한국이 Modality 성립후 개도국으로 C/S를 제출하고 주요 상대국들과 MA 분야에서 안을 마련하여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2005.6.10)
  
-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up>36)</sup>(스위스 제네바, 2005.5.30 ~ 6.3)가 WTO에서 개최됨
  -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 제한제도, 허용보조 등이 논의되었으며, 수출입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
    -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up>37)</sup>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에 대해서는 G33<sup>38)</sup>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우대를 요구하였으나, 많은 선진국과 일부 수출개도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G33의 간사국인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특별품목(SP)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

36) DDA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 Committee on Agriculture)에서 진행중이며, 현재 특별회의 의장은 Tim Groser(전 주제네바대표부 뉴질랜드 대사)가 맡고 있음.

37)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의 경우 2004.8.1의 기본골격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식량 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품목의 선정과 대우에 대한 협상은 진행중임.

38)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케냐, 모리셔스 등으로 구성된 개도국 그룹을 말함.

- 개도국 특별품목(SP)

- G33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 면제 및 TRQ 증량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 제안서에는 특별품목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선정기준이 특별품목 논의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호주 등은 특별품목이라 할지라도 시장접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페루 등 일부개도국은 열대농산물은 특별품목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특별품목에 대한 개도국간 이견도 관측됨

-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제도(SSM)

- G33은 SSM 관련 모든 개도국의 모든 농산물을 SSM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개도국들도 동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
- 미국, EC, 호주 등은 특히 모든 개도국이 SSM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개도국 세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인도, 터키, 한국, 중국 등이 반대

○ DDA 농업협상 G33 각료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05.6.11 ~ 12)

- 이번 각료회의에는 총 1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WTO 일반이사회의장(아미나 모하메드), DDA 농업협상의장(팀 그로서)도 참석
- 7월말경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전망으로 이번 G33 각료회의는 동 세부원칙 초안 제시를 앞두고 G33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제(SS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G33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음

○ 한국이 지난해 주요관심 9개국<sup>39)</sup>과 협상한 쌀관세화 유예협상(2004.1.1. ~

---

39) 9개국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12.30.)에서 쌀 이외의 부가적 합의사항(쌀 TRQ 증량, 관세인하, 식물검역 절차의 완화 등)에 유의

## (2) 개도국지위 관련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전략

- DDA 협상관련 향후 주요 일정은
  - 소규모 각료회의(중국, 2005.7.12 ~ 13)
  -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 제시 전망
  - APEC 정상회의(한국 부산, 2005.11.18 ~ 19)
  -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 2005.12.13 ~ 18)
  
- 오는 7월말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되기 전에 7월 12일 ~ 13일간 중국 따론펬에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
  - 동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개발 등 DDA 협상 전반에 대해 각료급에서 평가와 지침을 제시할 전망이다
  - 비농산물 협상은 다양한 관세감축공식이 제안된 상태이나 본격적인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협상은 지난 5월말 수정양허한 제출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허안 제출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농업협상이 DDA 협상 전반의 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임
  
-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12.13 ~ 18간 홍콩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 여부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협상전략의 구성 및 대응방안

1) I 단계 : 기본골격합의 이후부터 Modality 작성까지

- WTO/OECD 등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서 제기되는 개도국지위 분류에 대한 논의를 저지
  - WTO의 농업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OECD의 무역개발위원회 등에서 개도국의 세분류화, 졸업개념 도입 등 분류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
  -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멕시코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개도국 분류논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외교에 총력을 경주
  - 국내의 각국 외교단 및 한국 방문 농업관련 인사에게 현지시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농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 재계 등 비농업분야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을 설명하여야 함
  -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DDA의 다른 협상분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함
  - 소비자들에게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상실할 경우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농민들에게는 국제농업의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농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함을 설명하여야 함
  
- G33 등에서 적극 활동하며 제안서를 직접제출보다는 여타국가를 활용
  - G33 그룹은 SP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그룹임
  - 우리나라는 G33 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면서 제안서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을 활용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삼가는 것이 좋음
  
- 개도국우대에 대한 제안, 동조활동 강화

- 개도국우대에 대한 제안이나 동조활동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멕시코와는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인도 등 영향력 있는 개도국과도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10 내에서도 개도국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제안서에 개도국 입장을 반영
  - G10 그룹은 농산물 수입국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룹으로써 관세상한 설정을 반대하고,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을 주장하는 그룹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쟁점별 공조세력을 규합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반영

## 2) II 단계 : Modality 작성 이후부터 12월 홍콩 각료회까지

- 미해결분야에서 개도국 입장반영을 위해 노력
- G33에서의 활동강화
- 주요교역 상대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LIST 작성
- 한국의 개도국지위 부여에 대한 꾸준한 민·관 외교 활동 강화
  - 이번 DDA 농업협상은 UR 때보다 훨씬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임
  - 특히 개도국우대 조항이 UR 때보다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한국 농업의 사활이 걸림
  -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주요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동조국들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외부협상여건은 부정적인 면이 있음
  - 따라서 민·관 등 각계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외교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함

### 3) III 단계 : 홍콩 각료회의 이후부터 CS 제출까지

- 일단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C/S 제출함
- C/S을 제출하기 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관련되어 문제가 될 국가와는 양자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질 관심품목을 선정하여 각국별 협상 전략 방안을 모색함

#### □ 주요국 품목별 관심사항검토

##### ① 미국

- 미국의 관심품목은 과실류(오렌지, 그레이프 등),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유,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포도주 등

##### ② 캐나다

- 캐나다의 관심품목은 유채유, 대맥, 소고기, 돼지고기 등

##### ③ 호주

- 호주의 관심품목은 맥주맥, 낙동제품, 축산물, 천연꿀(마누카 꿀) 등

##### ④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관심품목은 낙동제품(특히 치즈), 과실류(키위 등)

##### ⑤ 중국

- 중국은 쌀협상의 부가적 합의사항으로 논의되었던 검역절차에 관심이 많을 것임
- 만약 부가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hard push 가능성이 있음

##### ⑥ EU

- EU의 관심품목은 유제품

⑦ 아세안국가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관심품목은 열대과일
- 특히 태국은 열대과일 이외에 쌀, 타피오카에 관심이 많음

⑧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은 이번 쌀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국의 요구사항을 주장한 국가들
- 인도의 관심품목은 쌀과 곡물류 등이며, 이집트는 쌀, 파키스탄은 곡물류와 열대과일

⑨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번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주요한 경계대상국가로서 이들 국가들 또한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브라질의 관심품목은 콩, 아르헨티나의 관심품목은 축산물(특히 소고기)
- 칠레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현재 양허율이 70%이며,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⑩ 최빈개도국

- 최빈개도국들에게 한국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들의 경제활동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최빈개도국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중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의 길을 열어줌

□ 대응방안

- 각국별로 제안되는 관심품목 및 현황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첫째, 시장접근분야로서 관세인하와 TRQ 방식이며
- 둘째, 검역절차 간소화 및 축소 방안이 있음

- 향후 각국별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카드로 시장접근분야와 검역분야를 고려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또한 실험상과정에서 드러난 양자 차원의 부가적 합의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카드로 활용함
- 양자차원의 부가적 합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캐나다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수준 유지 노력
- 유채유박(0%), 유채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10%→8%), 유채정제유(30%→10%)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② 아르헨티나

- 검역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WTO 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전문가 상호 방문을 추진

### ③ 중국

- 상대적으로 무역자유화를 강조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의 농산물 시장개방조건을 강조하면서 UR 때에 비해 높은 수준의 MMA와 보다 짧은 유예기간을 표명
- '03년 11월 접수하여 총 8단계중 3단계까지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 '04년 8월 접수된 사과·배·롱간(용안)·여지(리치)에 대해서는 4개품목에 대

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양벛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

- 양국간 논의가 진행중인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하고, 정식출범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검역 당국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중국측이 그 동안 제기해온 TRQ 품목 입찰절차 관련 사항은 한중 경제공동위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중국측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대상품목 축소와 세율을 인하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관심품목에 대해 반영을 하고 기존의 양자 채널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

#### ④ 인도

- MMA 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 ⑤ 이집트

- MMA 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1회 2만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 제 7 장 요약 및 결론

- 이번 DDA 농업협상은 UR 때보다 훨씬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특히 개도국우대 조항이 UR 때보다 확대됨으로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서는 한국 농업의 사활이 걸림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즉 개도국이란 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개도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
  - 개도국 중에는 특히 국민소득수준이나 경제개발의 정도가 극도로 낮은 나라들을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s)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기도 함
-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자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표준은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는 최소한도 국제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 표준이 필요함
  - 개도국분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인당 GNP 기준이며, IBRD와 IMF 및 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 또한 유사한 방법에 따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은 국가통계의 부정확성, 국가간 비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함께 사회·정치적 개발지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개도국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반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도국지위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한 합의도 없으므로 각종 국제기구들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들은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WTO 출범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와 GDP는 12,720불과 12,628불로 우리나라가 UR 협상결과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WTO체제가 출범한 95년(11,432불과 11,471불)의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전통적인 선진국 그룹인 미국(37,473불), 일본(31,674불), EU(30,636불)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 25,654불의 1/2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농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들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경제활동인구중 농림어업부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8.5%임에 반해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5%로 여타 부문에 비하여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519ha로 세계 139위, OECD 회원국중 28위이며,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캐나다(61.418ha)의 0.85%, 호주(56.185ha)의 0.92%, 미국(29.374ha)의 1.77%에 불과하여 우리의 농가들이 지극히 영세함을 알 수 있음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1990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이 97%로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점차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2003년에는 76%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농업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모든 지표를 보게되면 우리나라가 UR 협정 당시보다 크게 악화된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UR 당시 인정받았던 한국농업의 개도국지위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움
  
-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 기본골격합의 이후부터 Modality 작성까지, 2단계 : Modality 작성이후부터 홍콩 각료회의까지, 3단계 : 홍콩각료회의 이후부터 C/S 제출까지

○ 1단계에는

- WTO/OECD 등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서 제기되는 개도국지위 분류에 대한 논의를 저지
- 한국의 개도국지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외교에 총력을 경주
- G33 등에서 적극 활동
- 개도국우대에 대한 제안, 동조활동 강화
- G10 내에서도 개도국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제안서에 개도국 입장을 반영

○ 2단계에는

- G33에서의 활동강화
- 주요교역 상대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LIST 작성
- 한국의 개도국지위 부여에 대한 꾸준한 민·관 외교 활동 강화

○ 3단계에는

- 일단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C/S 제출함
- C/S을 제출하기 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관련되어 문제가 될 국가와는 양자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야별·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보가능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다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활용
- 각국별로 제안되는 관심품목 및 현황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첫째는 시장접근분야로서 관세인하와 TRQ 방식이며, 둘째는 검역절차 간소화 및 축소 방안이 있으며, 향후 각국별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카드로 시장접근분야와 검역분야를 고려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또한 쌍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양자 차원의 부가적 합의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카드로 활용함

## <참고문헌>

- 김동배, “무역과 개발문제: UNCTAD에서의 논의”, 『OECD FOCUS』,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7.
-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 남상열·권윤,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농림부, 「WTO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기본골격 마련」, 농림부 농업협상과, 2004.8.1.
- 농림부, 「WTO/DDA 개도국우대 관련 논의경과 및 쟁점」, 농림부 WTO 농업협상대책반, 2003.
- 농림부, 「WTO/DDA 농업협상 동향」,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5.4.
- 농림부, 「쌀 협상결과 설명자료」, 농림부 교육자료, 2005.5.
- 농림부,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 농림부 농업협상과, 2005.2.17.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 농림부,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 각년도.
- 농촌경제연구원, 「DDA 그로서 의장의 농업협상 평가와 전망」, 20005.2.2.
- 농촌진흥청, 「DDA 농업협상 관련자료집(2001~2004)」, 2004.10.
- 서진교,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까?”, 『OECD Focus』,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9.
- 서헌재, 『구제경제법 -국제통상·통화규범-』, 율곡출판사, 1998.
- 송유철 외,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송유철 외,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심영규, “WTO 차기 농업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0집, 한양법학학회, 1999.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의 득과 실」, 2002.11.
- 외교통상부,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보고서」, 2003.12.

- 이경원·배상건, “DDA 농업협상과 개도국 지위 유지”, 농협 조사부, 2003.
- 이신규, “WTO 농업협상의 주요 의제와 협상과제”,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03.2.
- 이신규, “WTO/DDA 농업협상의 평가와 과제”,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4.2.
-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도서출판 해냄, 2001.
- 임송수,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임송수,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임송수·김상현,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임송수·서진교·김상현·임소영,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임송수·이재욱·서진교·김상현,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임정빈,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과 시사점”, 『농업경제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03.3.
- 임정빈,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농업생명과학연구』, 36(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2.
- 임정빈,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의 의미와 시사점 :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수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DDA 농업협상과 한국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관한 심포지엄」, 농업협동중앙회, 2003.
- 임정빈, “미국과 케언즈 그룹의 WTO 농업협상 전략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6.
- 임정빈·이재욱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차동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7.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각년도.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년도.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DDA 농업협상 세미나 자료』, 2004.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1994.11.

FAO, "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s 2010", 1997.

Fatours, A.A.,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1986.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6 Number 40, November 21, 2002.

Joachim Betz, Developing Countries, in: R. Wolfrum(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1(Martinus Nijhoff Publishes), 1995.

Reuters, "World farm trade talks deadlocked, deadline looms", March 25, 2003.

Trebilcock, M.J. & R. Howse,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obert Howse(ed.), The World Trading System, Vol.1(Routledge), 1998.

[www.cvikorea.net](http://www.cvikorea.net)

[www.g77.org](http://www.g77.org)

[www.imf.org](http://www.imf.org)

[www.maf.go.kr](http://www.maf.go.kr)

[www.oecd.org](http://www.oecd.org)

[www.un.org](http://www.un.org)

[www.wto.org](http://www.wto.org)

<부록 1> OECD- DAC List

DAC List of Aid Recipients - As at 1 January 2003

Part I: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t II: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Official Aid)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Other Low-Income Countries (Other LICs) (per capita GNI < \$745 in 2001)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per capita GNI \$746-\$2975 in 2001)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UMICs) (per capita GNI \$2976-\$9205 in 2001)	High-Income Countries (HICs) (per capita GNI > \$9206 in 2001)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EECs/NIS)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udan Tanzania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Armenia *Azerbaijan Cameroon Congo, Rep. Côte d'Ivoire *Georgia Ghana India Indonesia Kenya Korea, Democratic Republic *Kyrgyz Rep. *Moldova Mongol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Tajikistan *Uzbekistan Viet Nam Zimbabwe	*Albania Algeria Belize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China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Fiji Guatemala Guyana Honduras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erated States Monoco Namibia Niue	Palestinian Administered Areas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 Montenegro South Africa Sri Lanka St Vincent & Grenadines Suriname Swaziland Syria Thailand *Tokelau Tonga Tunisia Turkey *Turkmenistan *Wallis and Futuna	Botswana Brazil Chile Cook Islands Costa Rica Croatia Dominica Gabon Grenada Lebanon Malaysia Mauritius *Mayotte Nauri Panama *St Helena St Lucia Venezuela	Bahrain	*Belarus *Bulgaria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Poland *Romania *Russia *Slovak Republic *Ukraine	*Aruba Bahamas *Bermuda Brunei *Cayman Islands Chinese Taipei Cyprus *Falkland Islands *French Polynesia *Gibraltar *Hong Kong, China Israel Korea Kuwait Libya *Macao Malta *Netherlands Antilles *New Caledonia Qatar Singapore Slovenia United Arab Emirates *Virgin Islands (UK)

\*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EECs/NIS).  
• Territory.

<부록 2> UNDP - LDCs LIST

The Current Lis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Key Indicators<sup>1</sup>

Country	Population 2002 (millions)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GNI) (US dollars)	Human Assets Index (HA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EVI (modified) <sup>2</sup>
1. Afghanistan	23.3	523	11.6	50.1	49.0
2. Angola	13.9	447	25.6	48.5	46.8
3. Bangladesh	143.4	363	45.3	22.9	29.5
4. Benin	6.6	367	40.2	57.0	56.4
5. Bhutan	2.2	600	40.4	40.6	41.0
6. Burkina Faso	12.2	217	26.5	49.3	47.0
7. Burundi	6.7	110	19.7	53.8	49.6
8. Cambodia	13.8	263	44.5	49.7	48.1
9. Cape Verde	0.4	1 323	72.0	55.5	56.7
10. Central African Republic	3.8	277	29.9	43.1	42.0
11. Chad	8.4	203	26.1	59.2	56.6
12. Comoros	0.7	387	38.1	59.1	58.7
13.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54.3	100	34.3	40.8	42.3
14. Djibouti	0.7	873	30.2	48.6	49.5
15. Equatorial Guinea	0.5	743	47.2	64.4	55.8
16. Eritrea	4.0	190	32.8	51.7	50.2
17. Ethiopia	66.0	100	25.2	42.0	40.7
18. Gambia	1.4	340	34.0	60.8	56.5
19. Guinea	8.4	447	30.3	42.1	40.0
20. Guinea-Bissau	1.3	170	31.2	64.6	60.7
21. Haiti	8.4	493	35.3	41.7	43.5
22. Kiribati	0.1	923	67.5	64.8	60.4
23.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5.5	297	46.4	43.9	43.4
24. Lesotho	2.1	573	45.4	44.2	44.5
25. Liberia	3.3	285	38.7	63.1	58.3
26. Madagascar	16.9	253	37.9	21.6	27.0
27. Malawi	11.8	177	39.0	49.0	49.4
28. Maldives	0.3	1 983	65.2	33.6	37.5
29. Mali	12.0	230	19.9	47.5	45.4
30. Mauritania	2.8	377	38.2	38.9	37.7
31. Mozambique	19.0	220	20.0	35.6	39.2
32. Myanmar	49.0	282	60.0	45.4	45.6
33. Nepal	24.2	240	47.1	29.5	31.0
34. Niger	11.6	180	14.2	54.1	53.1
35. Rwanda	8.1	230	34.1	63.3	59.6
36. Samoa	0.2	1 447	88.8	40.9	50.8

<i>Country</i>	<i>Population 2002 (millions)</i>	<i>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GNI) (US dollars)</i>	<i>Human Assets Index (HAI)</i>	<i>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i>	<i>EVI (modified)<sup>2</sup></i>
37. Sao Tome and Principe	0.1	280	55.8	41.8	37.0
38. Senegal	9.9	490	38.1	38.4	38.8
39. Sierra Leone	4.8	130	21.7	45.7	43.3
40. Solomon islands	0.5	657	47.3	46.7	49.1
41. Somalia	9.6	177	8.5	55.4	53.1
42. Sudan	32.6	333	46.4	45.2	46.5
43. Tanzania, United Republic of	36.8	263	41.1	28.3	30.2
44. Timor-Leste <sup>3</sup>	0.8	478	36.4	n.a.	n.a.
45. Togo	4.8	293	48.6	41.5	42.8
46. Tuvalu	0.01	1 383	63.7	70.3	67.3
47. Uganda	24.8	297	39.8	43.2	41.6
48. Vanuatu	0.2	1 083	57.4	44.5	46.4
49. Yemen	19.9	423	46.8	49.1	49.0
50. Zambia	10.9	317	43.4	49.3	47.6

*Notes:*

1. *Thresholds for inclusion in the lis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population less than 75 million;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GNI) less than \$750; Human Assets Index (HAI) less than 55; and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greater than 37. A country must meet all the criteria to be included in the list. Thresholds for graduation from the lis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per capita GNI greater than \$900; HAI greater than 61; and EVI less than 33. A country must meet at least two criteria to be eligible for gradu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se criteria for inclusion and graduation, see Review of LDCs [http://www.un.org/esa/policy/devplan/egm03rep.pdf].*

2. *EVI with a sixth component, namely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displaced by natural disasters. The threshold for inclusion regarding this modified EVI is a score greater than 38; whereas the threshold for graduation is less than 34 [http://www.un.org/esa/policy/devplan/egm03rep.pdf].*

3. *Timor-Leste was officially added to the list of LDCs on 17 December 2003.*

<부록 3> UNFCCC - LDCs LIST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rica		Asia		SIDS	
1	Angola	1	Afghanistan	1	Cape Verde
2	Benin	2	Bangladesh	2	Comoros
3	Burkina Faso	3	Bhutan	3	Haiti
4	Burundi	4	Cambodia	4	Kiribati
5	Central African Republic	5	Lao People's Dem. Rep.	5	Maldives
6	Chad	6	Myanmar	6	Samoa
7	Dem. Rep. of the Congo	7	Nepal	7	Sao Tome & Principe
8	Djibouti	8	Yemen	8	Solomon Islands
9	Equatorial Guinea			9	Tuvalu
10	Eritrea			10	Vanuatu
11	Ethiopia				
12	Gambia				
13	Guinea				
14	Guinea Bissau				
15	Lesotho				
16	Madagascar				
17	Malawi				
18	Mali				
19	Mauritania				
20	Mozambique				
21	Niger				
22	Rwanda				
23	Senegal				
24	Sierra Leone				
25	Sudan				
26	Togo				
27	Uganda				
28	Tanzania				
29	Zambia				
30	Liberia				
	<i>Somalia</i>				
<b>30 UNFCCC African LDCs</b>		<b>8 UNFCCC Asian LDCs</b>		<b>10 UNFCCC SIDS LDCs</b>	

*Note: Somalia is not Party to the Convention.*